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000-00

정책보고서 2016-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정보화 지원방안 연구



함영진 · 정홍원 · 이연희 · 류진아

【책임연구자】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공저)

【공동연구진】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연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 계약한(2016.00.00.)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조정
관련 정보화 지원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상 호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01
제2장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관리 현황	5· 1
제1절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7· 1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 안건 현황	0· 3
제3절 협의제도 운영과 정보관리체계의 필요성	8· 3
제3장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정보 분류체계 및 특성 분석	3· 4
제1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정보 관리체계 마련	5· 4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현황	0· 6
제4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관리 개선방안	7· 8
제1절 심사관련 업무 전자화 적용사례 분석	9· 8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관리 목표시스템	3· 9
제3절 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6· 9
제5장 결론	103
제1절 결론	105
제2절 정책 시사점	10
참고문헌	115

표 목차

<표 2-1-1>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의 기준	27
<표 2-2-1> 연도별, 제출기관별 신설·변경 협의 안건 수	30
<표 2-2-2>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협의 안건 현황	31
<표 2-2-3> 연도별 협의 안건의 유형	32
<표 2-2-4> 2015년 제출기관별 협의 안건의 유형	32
<표 2-2-5> 2015년 협의 안건의 대상자별 현황	33
<표 2-2-6> 협의 안건(사업)의 목적별 현황	36
<표 2-2-7> 2015년 협의 안건의 목적별, 제출기관별 현황	37
<표 2-2-8> 협의 안건(사업)의 목적별, 대상자별 현황	37
<표 3-1-1>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유형분류틀 마련을 위한 검토 흐름	47
<표 3-1-2>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유형분류틀 상세내역	48
<표 3-1-3>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개요	50
<표 3-1-4>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유형분류	51
<표 3-1-5>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급여유형	51
<표 3-1-6>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현금 및 현물	52
<표 3-1-7>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바우처 및 서비스	52
<표 3-1-8>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전달체계	53
<표 3-1-9>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재원	54
<표 3-1-10>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정보시스템	54
<표 3-1-11>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급여기준 변동사항	55
<표 3-1-12>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대상자 변동여부	56
<표 3-1-13>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재원분담 변동여부	56
<표 3-1-14>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정보시스템 변동여부	57
<표 3-1-15>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협의진행	58
<표 3-1-16>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협의완료	59
<표 3-1-17>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조정	59
<표 3-2-1> 연도별 기관 유형 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현황	61
<표 3-2-2> 17개 시도의 연도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현황	62
<표 3-2-3> 기관유형별 집단 간 사업근거별 분류 현황	63

<표 3-2-4> 연도별 기관유형 간 사업목적별 분류 현황	65
<표 3-2-5> 연도별 기관유형 간 사업대상자별 분류 현황	67
<표 3-2-6> 기관유형별 신설 및 변경여부 간 사업예산 현황	68
<표 3-2-7> 연도별 신설 및 변경여부 간 기관유형에 따른 급여기준 현황	70
<표 3-2-8> 연도별 신설 및 변경여부 간 기관유형에 따른 급여유형 현황(중복체크)	72
<표 3-2-9> 중앙부처의 소요재원 구분에 따른 재원구성 현황	73
<표 3-2-10> 지자체(시도)의 소요재원 구분에 따른 재원구성 현황	74
<표 3-2-11> 지자체(시군구)의 소요재원 구분에 따른 재원구성 현황	75
<표 3-2-12> 집단별 변경사업의 변경내역 현황: 급여기준과 대상자기준 변동 현황	76
<표 3-2-13> 집단별 변경사업의 변경내역 현황: 재원부담과 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변동 현황	77
77	
<표 3-2-14> 연도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현황	78
<표 3-2-15> 중앙부처의 연도별 신설 변경 여부에 따른 협의결과 현황	79
<표 3-2-16> 시도의 연도별 신설 변경 여부에 따른 협의결과 현황	80
<표 3-2-17> 시군구의 연도별 신설 변경 여부에 따른 협의결과 현황	81
<표 3-2-18> 사업목적별 협의결과 현황	83
<표 3-2-19> 사업대상자별 협의결과 현황	84

그림 목차

[그림 2-2-1] 대상자별 협의 안건의 연도별 추이	34
[그림 4-1-1] 특허넷 온라인 접수 및 심사관시스템	89
[그림 4-1-2]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91
[그림 4-1-3] 온라인행정심판 포털사이트(https://www.simpan.go.kr) 화면	92
[그림 4-2-1] 사회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시스템 목표이미지	94
[그림 4-3-1] 신설변경협의시스템 메뉴구조도	97
[그림 4-3-2]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 예시	99
[그림 4-3-3] 심의 사전검토 프로세스 예시	101
[그림 4-3-4] 협의결정결과 관리 프로세스 예시	10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양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한정된 복지재정으로 복지사업의 무한한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면밀한 사회보장제도의 설계가 중요해 졌음.
 -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협의·조정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이해가 부족하였고 산발적인 업무 처리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사업 속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보 분류틀을 도출하고 이를 준거틀로 설정하여 협의·조정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있음.
- 아울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DB 구성안을 도출하고, 향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화 지원방안을 제시함.

2. 주요 연구결과

- 협의·조정을 완료한 사회보장 사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였음.
 - 사회복지 사업의 분석틀은 사업 식별번호, 사업개요, 사업유형, 사업속성,

협의 및 조정 내역을 준거로 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함.

○ 대분류는 사업개요, 사업유형, 사업속성, 협의진행, 협의완료, 조정으로 구분되며, 사업개요는 식별번호, 신청기관, 신청유형 그리고 사업근거로 구분됨.

□ 분석틀에 따라 2013년부터 협의·조정 과정을 거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현황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협의조정과정을 거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은 총 1,233건이며, 협의조정 건은 급증하였음.

○ 총 4년 간 신설 사회보장사업은 788건(63.9%), 변경은 445건(36.1%)으로 신설이 변경보다 많았음.

○ 협의·조정을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수는 총 1,146건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중앙부처는 총 87개의 사업이 협의·조정 과정을 거침.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속성을 분석하여 목적별, 대상자별로 살펴본 결과 사업의 목적으로는 ‘보호돌봄’ 253건(20.5%), ‘생활지원’ 246건(20.0%), ‘재해보상’ 182건(14.8%), ‘건강의료’ 119건(9.7%)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사업의 대상으로는 ‘여성가족’ 261건(21.2%), ‘고령자노인’ 196건(15.9%), ‘보훈대상자’ 186건(15.1%), ‘아동청소년’ 150건(12.2%), ‘저소득’ 136건(11.0%)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임.

○ 급여 유형 분석 결과에서는 현금성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중앙부처는 바우처, 지자체는 현금성 복지사업이 높은 수치를 보임.

○ 신설 및 변경사업 1,233건의 협의결과는 ‘동의’가 758건(61.5%)로 가장 많았고 ‘협의진행중’(176건, 14.3%), ‘반려’(137건, 11.1%), ‘부동의’(89건, 7.2%), ‘철회’(48건, 3.9%), ‘대안권고’(25건, 2.0%)의 순으로 많았음.

-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협의조정이 이루어졌던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화가 필요함.
- 전산시스템은 신설·변경 포털시스템, 신설·변경 협의업무시스템, 협의지원시스템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현할 것을 제안함.
 - 포털시스템은 온라인상 신설·변경 신청 응대 및 각종 자료 제출, 진행 상황 조회.
 - 협의업무시스템은 접수관리, 협의조정 관리, 결정서 작성 지원, 협의체 개최관리.
 - 협의지원시스템은 요청건 열람 검토, 일정 관리.
- 사용자 측면에서는 협의·조정을 요청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용 서비스와 관리자용 서비스로 구분하며, 대국민을 위한 정보 및 통계 제공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협의·조정 제도의 정보관리 및 제공 그리고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세 가지 사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함.
- 첫째, 사회보장 협의·조정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대국민뿐만 아니라 협의 대상자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핵심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업무처리의 전산화가 필요함.
- 둘째, 협의·조정 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대국민에게는 정보를 이해 용이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협의 당사자인 중앙부처와 지자체에게는 컨설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상자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셋째,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제도의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

해 전산화가 필요하지만, 담당자의 업무 부담 발생 등 정보의 역기능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주요용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 정보화 지원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절차 및 관리방안과 그간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협의조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세 가지로 함축됨.
 - 첫째, 2013년부터 협의조정이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속성정보를 분석하여, 표준화된 분류틀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는데 있음.
 - 둘째,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와 관리방안을 살펴보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음.
 - 마지막으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협의조정 절차를 전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본 연구의 배경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제도의 시행 필요성과 맥락을 같이함.
 -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대응을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양적인 발전은 이루어졌음.
 - 이러한 과정에서 유사한 목적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양산되었고, 사회보장제도들 간 중복과 복지재정 비건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
 -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 문제점은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를 저해하고 효율적인 복지재정의 분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물론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제도가 중복이 되더라도 수요자측면에서 복지 욕구 충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유사조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복지재정과 늘어나는 복지욕구의 효율적인 분배와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설계가 필요함.
- 물론 지방자치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야하고, 복지수요자의 욕구 충족성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한정된 복지재화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측면 또는 중앙과 지방간 정부간 관계측면에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임.
- 이러한 문제점 인식하에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특히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정책조정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
- 특히, 사업간 조정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특성과 내역 간 관계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중앙부처간 유사한 사회보장제도 정보를 분석하여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정책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에서 시작된 논쟁이기도 하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이나, 보충이나의 논의로 보임.
- 즉, 복지제도의 세부속성과 기준을 중심으로 보면 유사성과 중복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고, 복지욕구의 충족성 측면에서는 중복이 아니라 보완재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조정은 양면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조정은 유한한 복지재정의 분배와 국가사회보장제도의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갈등도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설계와 중앙과 지자체간 역할설정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
- 아울러, 그간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중앙과 지자체, 각 부처와 부서 간 칸막이식 복지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방안으로 볼 수 있음.
- 왜냐하면, 사회보장위원회를 위시로 하여 부처 간 발생하는 정책중복 현상과 중앙과 지자체간 정책갈등의 문제가 표면으로 부각됨으로써, 단기간에는 갈등만이 부각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국가복지설계를 위한 정책형성 과정으로 이해가능 함.
- 그간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조정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접근과 공개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었음.
- 이 때문에 지자체 신설변경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만이 언론에 부각됨으로써 협의조정의 실태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효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였음.
- 그리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이 중앙부처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축소, 또는 복지예산 삭감으로만 비춰졌음.
- 하지만, 협의조정 과정에서 지자체별 정책 컨설팅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의 체계성이 제고되는 정책효과가 있었으며, 국가사회보장제도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협의조정의 정책효과는 간과된 면이 큼.
- 본 연구는 그간 간과되었던 협의조정을 거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들이 협의조정을 거쳤으며, 이의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실태분석을 시도함.

○ 이를 위해 그간 협의조정을 거친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표준화된 분류틀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태 분석함.

○ 아울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분류틀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 DB 구성안을 도출하고, 향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화 지원방안을 제시함.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 분석대상 및 방법

□ 협의조정 절차를 거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였음.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업정보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 내역이며, 그간 해당 정보는 사업별로, 담당자별로, 연도별로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음.

□ 2013년 61건, 2014년 81건, 2015년 361건 그리고 2016년 9월까지 700여 건이 이루어졌고, 급속히 증가한 신설변경 협의 처리 업무에 따라 실상 사회보장사업 속성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왜냐하면, 협의조정이 필요한 신설변경사업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기존 협의조정이 이루어졌던 사회보장제도들의 관리속성들을 도출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본 연구는 그간 산발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관리체계에 대한 전산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연구를 수행함.
 - 첫째, 그간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의 속성정보를 파악함.
 - 둘째, 해당 사업의 속성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항목과 관리방안을 도출함.
 - 마지막으로 제시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분류틀을 중심으로 사업들의 속성정보를 재분류하고, 이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함.
- 기존문헌과 법제도분석을 통해 협의조정제도의 개념정립 및 협의제도 운영과 정보관리체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음.
-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분석하여 협의조정 제도에 대한 개념정립과 절차를 살펴보았으며, 그간 협의조정 안건 현황을 재분석하였음.
 - 아울러 협의제도 운영과 정보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음.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정보 분류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 사회보장제도 분류체계 현황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FGI를 수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정보 분류체계 마련 후 전산적용에 앞서 정보화 기관과 심층적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류항목 및 체계의 정교화 과정을 거침.
 - 아울러 정보시스템과 통계관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정보의 전산화 방안과 통계적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2. 연구내용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협의조정이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회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체계화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해당사업의 관리체계에 대한 전산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속성정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성요소를 재 분석하여 관리체계를 마련함.
- 아울러 명확한 협의조정절차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적 지원 및 정보 관리체계마련을 목적으로 함.

□ 이와 같은 목적 하에 본 연구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첫째, 2013부터 시작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정보를 파악하여, 체계화된 분류틀을 도출하고, 실태분석을 함.
- 둘째, 협의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절차 표준화 및 전자화 방안을 도출 함.
- 마지막으로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정보를 분석하고, 제도적 절차와 정보화 지원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정보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업 주체, 협의조정 요청 시기, 복지대상, 복지욕구, 예산유형, 급여기준, 전달체계, 변경항목 및 협의조정 시기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첫째, 협의조정이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고유관리번호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연도 구분, 중앙과 지자체 구분, 시도와 부처 구분, 신설과 변경의 구분과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음.
- 둘째, 사업개요에 대한 항목을 기관, 신설변경여부와 순차 그리고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유형분류체계 마련을 위해 목적별, 대상자별 그리고 예산기준별로 구분하였음.
-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급여기준, 급여유형과 지급주기 및 규모를 구분하

였으며, 업무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신청, 조사, 결정, 지급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달체계에 대해 살펴보았음.

○ 넷째, 국고와 지방비 그리고 주 재원과 부 소요재원에 대해 구분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정보시스템의 사용여부와 활용분야에 대한 분류항목을 제시하였음.

○ 다섯째, 변경사업에 대한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대상자, 재원분담,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분류틀을 제시하였고, 협의 진행과정에 대한 분류항목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이 분류한 협의조정이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정보를 분석하였음.

○ 협의조정이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주관 기관, 시기, 급여기준, 목적 및 대상과 예산분류체계 그리고 변경항목을 중심으로 속성정보를 분석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전자적 관리를 위해 목표 시스템 이미지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기능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 관련 기존문헌을 살펴보았고, 정보관리체계에 대한 국내외 수범사례 검토를 수행하였음.

□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주요 항목을 기준으로 연구내용을 살펴봄 다음과 같음.

○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함.

○ 제2장 신설변경사업의 관리현황에서는 협의조정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정보관리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함.

○ 제3장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정보를 분석하여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태를 분석함.

- 제4장에서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필요 절차 전산화 하고, 이에 대한 속성정보의 관리체계 방안을 도출함.
-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향후 협의조정 절차의 지속가능성과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함.

제 2 장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관리 현황

제1절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 안건 현황

제3절 협의제도 운영과 정보관리체계의 필요성

2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관리 < 현황 <

제1절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1.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요

□ ‘협의’와 ‘조정’

- ‘협의’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함(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 ‘조정’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협의 안건 심의처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함(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

□ 협의제도의 의의

-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들의 연계를 통하여 조화로운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함.
 - 사회보장업무 담당자가 해당 사업의 내용과 대안을 폭 넓게 검토·분석하고,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투입 자원과 사업의 기대효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 최선의 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추구함
-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제도, 유사·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초

래할 수 있는 사업,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제도 등의 신설·확대를 억제하는 동시에 사회보장 급여의 중복, 편중, 누락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음.

□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 관련 법률의 내용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협의 운용방안) ~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 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

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 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

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운용방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의 대상과 범위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대상

○ 협의·조정 대상은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 및 평생사회

안전망에 해당하는 제도 및 사업

- (사회보장 급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1항)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

□ ‘신설’·‘변경’의 의미

- (신설)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설에 해당

- 사회보장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신설에 해당

○ (변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의 변동을 의미(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연령,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

- 대상자의 소득수준 변경 :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등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기준 변경 : 소득 →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 소득인정액 등
- 연령 기준 변경 : 3세 미만 → 5세 미만, 60세 이상 → 65세 이상 등
- 장애 정도 변경 : 장애 1~2등급 → 1~3등급, 장애 1~3급 → 등록장애인(1~6등급) 등
- 가구 특성 변경 : 청소년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구, 자녀가 두명 이상인 다문화가구 →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구 등

- (재원분담) 재원조달 방법, 국고보조율 등의 재원 변경

- 재원조달 방법 변경 : 전액 정부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등
- 국고보조율 변경 : 국고보조율 50% → 국고보조율 60% 등

※ 시·도, 시·군·구, 교육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변경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신설·변경 협의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급여 내용) 급여 수준 변경, 급여 항목의 추가 또는 감소, 급여 형태 변경 등

- 급여수준 변경 : 1인당 월 5만원 → 1인당 월 6만원, 가구당 연 20만원 → 가구당 연 30만원 등
- 급여 항목의 추가 또는 감소 : 교육비 →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 급여 형태 변경 : 현금 → 바우처, 현금 → 비용면제 등
- (전달체계 변경)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기관, 제공기관 등의 변경
 - 급여 신청기관 변경 : 특별행정기관 → 시군구, 공공기관 → 읍면동, 시군구 → 읍면동 등
 - 급여 제공기관 변경 : 읍면동 → 학교, 고용센터 → 읍면동 등

□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의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닌 전액 민간재원으로 시행하는 제도
-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과 관련이 없는 조직·기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법률·조례의 제·개정
 - (사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00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신설,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등
-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나 대상자 수 또는 예산(액) 규모가 변동이 있는 경우
 -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법령에서 정하는 항목이 반영되어 대상자 규모, 급여 수준, 예산 등이 변동되는 것은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의 대상이 아님
- 사회보장 관련 법령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의 개폐

1)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란 아래에서 열거하는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하위 행정규칙을 의미함.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사회사회보장제도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 일본군위인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 지원

※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회보장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의 개폐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신설·변경 협의 대상임

- 사회보장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설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 기관 및 단체를 지칭함

• (사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2조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사회사회보장제도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을 포함

-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 지원의 의미

-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관·단체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지원
-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²⁾를 위한 사업비 지원

※ 시설·기관·단체 등의 고유 업무 이외에 사업비 지원은 협의 대상임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구강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2) 고유 업무의 사례 : 사회복지관(사회사회보장제도법 제2조 제5호)

사회복지관의 고유 업무란 사회사회보장제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 및 동 별표3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의미함. 사회복지관의 3대 고유 업무를 제외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탁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설·변경 협의 대상임.

3.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 절차

□ 신설·변경에 따른 협의 요청

- (협의 요청)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
 - 시·도와 시·군·구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 협의요청서 제출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결과나 의견을 첨부
- (협의 시점)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제출
 - 4월말 이후에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협의요청서를 제출
 - 협의요청서는 사업 시행 예정일 180일(6개월) 이전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 예정일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해당 법률·조례를 제출하는 일로 봄
 -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협의 진행

- (협의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
- (자료 보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협의요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의 보완을 요구
- (검토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검토 결과를 통보
 - 검토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통보하며, 검토 결과는 ‘동의’, ‘변경보완’, ‘부동의’의 3가지로 구분

- (동의) 변경보완 내용이 없이 신설변경 제도의 시행에 동의하는 경우
- (변경보완)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를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하여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의)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협의 결과) ‘협의 완료’ 또는 ‘조정절차 진행’으로 구분

- (협의완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결과를 협의요청기관이 동의하거나 변경보완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협의를 종료
 - 협의완료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 (조정절차 진행) 보건복지부의 변경보완 의견을 따르지 않거나 부동의할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절차 진행

□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 (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을 진행

- (1차 조정)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 협의요청서 제출기관, 관계 전문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참여하에 논의를 하여 조정
- (2차 조정) 1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하고, 안건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조정

○ (조정결과 처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여부 결정, 해당 제도의 내용을 변경·보완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 신설·변경 협의의 이행 점검

○ (예산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 및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 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예산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때에는 해당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예산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자료요구 및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완료 사항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집행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4.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의 기준

○ 신설·변경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표 2-1-1>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의 기준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 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⑫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5. 기타	⑭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⑮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사업의 타당성

○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 사업기획 및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 규정이 있는지 여부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행하도록 규정 또는 조례로 위임이 되어있는 경우 근거조항 명시

○ 지역문제의 시급성 등 지역특수성

-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수요파악 자료 등 지역에서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나 경위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지역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사유 등 기존제도의 한계에 대한 평가 내용

○ 사업 취지와 사업 내용 간의 연계성

-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등 제도의 취지와 사업 내용 간 연계성 확보 여부

○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 기대효과, 사업설계 분석 등에 대한 분석결과(연구용역)를 제출

□ 기존제도와의 관계

○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 급여·서비스 제공 여부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수급자(개인 또는 가구)에 대한 급여의 중복, 편중 여부

○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개별제도의 수급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선정기준의 구체성, 선정기준 적용의 배타성 확보 등)

○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급여를 추가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필요

□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급여의 통합제공과 제도 간 연계를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 구축은 지양하고,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 방안과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지 검토
- 수혜자 접근성(편의), 급여제공의 적시성
 - 신청기관의 지역적 분포 검토, 급여·서비스의 제공 기관이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수급대상자에 대한 필요정보(소득, 재산, 자격, 수혜급여 이력 등) 파악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체 예산 중 신설·변경 사업예산 비율 등 검토
 - 재정집행의 효율성
 - 지자체의 경우 제도 신설로 국가사업의 지방비 분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 기타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의 경우 적정급여 수준에 대한 추가적 고려 검토
 - 제도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협의 후 사업시행까지 전달체계 구축, 인력·재원 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 안건 현황

1. 협의 안건 수와 제출기관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을 위한 협의·조정 안건 현황

-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협의를 위한 제출안건이 급격하게 증가
 - 61건(2013년) → 81건(2014년) → 361건(2015년)
- 2015년 361건 중 348건(96.4%)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안건
 - 중앙행정기관은 13건(3.6%), 광역자치단체(시·도)는 89건(24.7),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259건(71.7%)의 안건을 제출
- 시·군·구 안건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에 시·도와 중앙부처 안건의 비중은 감소
 - 시·군·구 : 21.3% (2013년) → 56.8% (2014년) → 71.7% (2015년)
 - 시·도 : 29.5% (2013년) → 25.9% (2014년) → 24.7% (2015년)
 - 중앙행정기관 : 49.2% (2013년) → 17.3% (2014년) → 3.6% (2015년)
- 2015년에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안건(13건)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7건으로 가장 많고, 여성가족부 3건, 그리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통일부가 각각 1건

<표 2-2-1> 연도별, 제출기관별 신설·변경 협의 안건 수

(단위: 건)

기관 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중앙행정기관		30	14	13
지방자치단체	시·도	18	21	89
	시·군·구	13	46	259
합계		61	81	361

○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안건을 시·도별로 구분하면 <표 2-2-2>와 같음

- 경기도의 협의 안건이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북 53건, 전남 36건, 인천 29건, 충남·경남·충북이 각 27건 등의 순임
- 반면에 울산의 협의 안건이 5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대구·세종·제주 각 6건, 부산 7건, 광주·대전·강원이 각 8건으로 나타남

○ 2015년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안건을 자치단체 유형별로 구분하면,

- 지방자치단체 안건 348건 중 광역자치단체(시·도) 안건은 89건(25.6%)이며, 이 중 특별·광역시청이 48건(13.8%), 도청이 41건(11.8%)을 협의
-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안건은 259건(74.4%)이며, 이를 세분하면 시청이 123건(35.3%), 군청이 103건(29.6%), 자치구청이 33건(9.5%)의 순임

<표 2-2-2>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협의 안건 현황

(단위: 건)

지자체	시·도	기초자치단체			합계
		시	군	자치구	
서울	7	0	0	5	12
부산	3	0	0	4	7
대구	2	0	0	4	6
인천	16	0	0	13	29
광주	5	0	0	3	8
대전	4	0	0	4	8
울산	5	0	0	0	5
세종	6	0	0	0	6
경기	8	48	6	0	62
강원	3	3	2	0	8
충북	2	7	18	0	27
충남	5	13	9	0	27
전북	4	14	35	0	53
전남	0	12	24	0	36
경북	2	16	3	0	21
경남 ¹⁾	11	10	6	0	27
제주	6	0	0	0	6
합계 ²⁾	89	123	103	33	348

주 1) 경남은 본청 9건과 경남 교육청이 제출한 2건을 합하여 총 11건임

2) 중앙행정기관 제출안건 13건을 합하면 안건은 총 361건임

□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안건 보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안건의 비중이 높음

○ 2015년 총 361건 중 신설 안건은 246건(68%)이며, 변경 안건은 115건(31%)

○ 신설 안건의 비율은 2013년에 비해 높으며, 2014년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

- 신설 : 37건, 60.7%('13년) → 56건, 69.1%('14년) → 246건, 68.1%('15년)

- 변경 : 24건, 39.3%('13년) → 25건, 30.9%('14년) → 115건,

31.9%('15년)

<표 2-2-3> 연도별 협의 안전의 유형

(단위: 건)

년도	신설 안전	변경 안전	합계
2013년	37	24	61
2014년	56	25	81
2015년	246	115	361

○ 2015년에 협의 안전 제출기관에 따른 안전의 유형을 보면

- 중앙행정기관은 13건 중 8건(61.5%),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경우에는 89건 중 62건(69.6%)이 신설 안전
- 기초자치단체는 259건 중 176건(67.9%)가 신설 안전이며, 이를 세분하면 시청은 60.9%, 군청은 75.7%, 그리고 자치구청은 69.6%가 신설 안전

<표 2-2-4> 2015년 제출기관별 협의 안전의 유형

(단위: 건)

기관 유형	신설 안전	변경 안전	합계
중앙행정기관	8	5	13
광역자치단체	62	27	89
기초자치단체	시	48	123
	군	25	103
	자치구	10	33
합계	246	115	361

2. 협의 안전의 내용

□ 협의 안전의 대상자별 현황

○ 2015년 협의 안전 361건의 내용을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별로 구분하

면,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설·변경 협의 안건이 16.3%(5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으며,
- 다음으로는 태아(산모)와 장애인이 12.5%(45건), 보훈대상자 11.6%(42건), 빈곤층 10.8%(39건), 여성·가족 9.4%(34건), 아동·청소년 7.8%(28건), 영유아 5.0%(18건) 그리고 청·장년 2.2%(8건)의 순임

<표 2-2-5> 2015년 협의 안건의 대상자별 현황

(단위: 건)

대상자	빈도(건)	퍼센트(%)
태아(산모)	45	12.5
영유아	18	5.0
아동·청소년	28	7.8
청장년	8	2.2
노인	59	16.3
빈곤층	39	10.8
장애인	45	12.5
여성·가족	34	9.4
보훈	42	11.6
기타	43	11.9
합계	361	100

○ 제출 안건의 대상자별 구분을 연도별 비교는 [그림 ?]을 참고

- 2014년과 비교하여 대상자별 구분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영유아·아동·청소년 영역의 비중(13.6% → 25.2%)과 기타 영역의 비중(14.8% → 25.8%)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노인 영역의 비중(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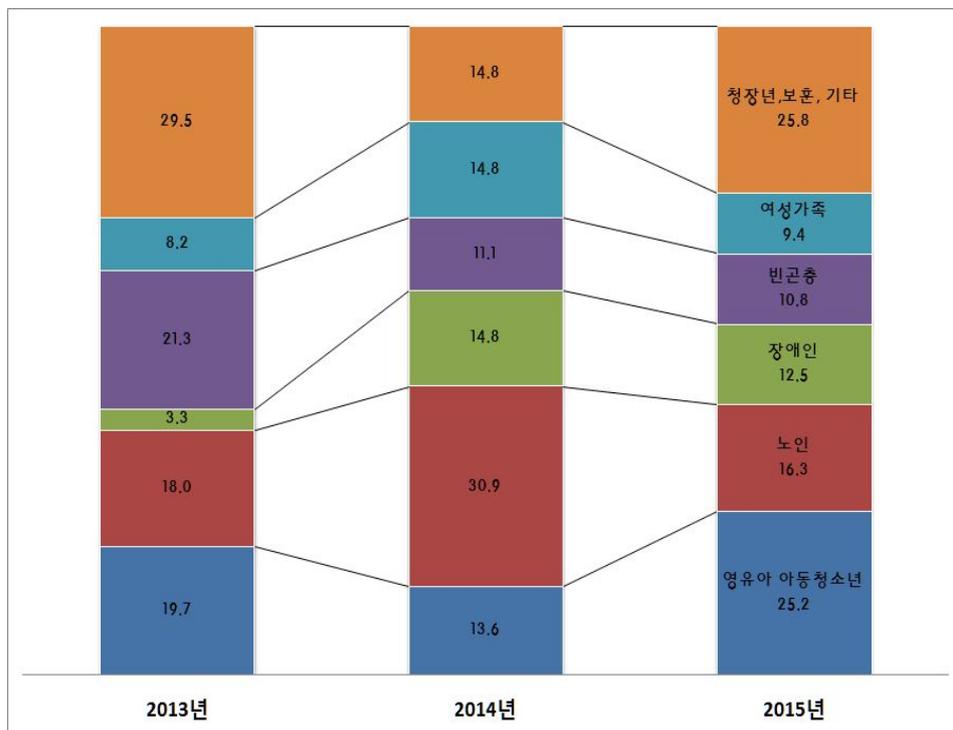
16.3%)이 상당한 수준 감소한 것임

○ 2014년에 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설·변경 안건의 수는 증가했으나 (25건 → 59건), 전체 안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기초연금의 시행 이후 기초연금 유사수당에 해당하는 현금 급여의 신설 또는 확대를 억제하면서, 노인복지서비스를 확충하려는 정책적 노력에 따라 안건 제출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됨

[그림 2-2-1] 대상자별 협의 안건의 연도별 추이

(단위: %)



○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건 수와 비중의 증가는 출산 지원 사업과 교육(비) 지원 사업이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2014년에 전체 81개 안건 중에서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 11건 (13.6%)
- 2015년 안건은 91건(25.2%)로 증가하였으며, 대상을 태아(산모), 영유아, 아동청소년 등 3개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태아(산모) 대상 : 45건(12.5%), 출산(비) 지원
 - 영유아 대상 : 18건(5.0%),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 28건(7.8%), 교복(비) 지원 등 교육 지원
- 기타 대상자를 위한 사업(안건)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정기적 현금급여 안건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보훈대상자를 위한 신설·변경 안건은 42건, 11.6%(<표 ?> 참고)
- 장애인, 여성가족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설·변경사업의 안건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설·변경 안건의 경우에 장애인연금 급여 확대 이후에 현금급여에 관한 안건은 감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의 추가 지원을 위한 안건을 지속적으로 제출함.
 - 여성가족 분야는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지원이 안건의 주요 내용임.
 -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한 보충급여, 주거급여, 기초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 지원 등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안건이 제기됨

□ 협의 안건의 사업 목적

- 협의 안건을 사회보장사업의 목적별로 구분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성인돌봄을 위한 사업이 52건, 1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소득·빈곤·생계지원 50건(13.9%), 출산 지원 47건(13.0%), 사회적 보상 42건(11.6%), 교육(비) 지원 29건(9.0%), 보육(료) 지원 27건(7.5%), 보건의료 26건(7.2%), 그리고 주거(에너지)지원 13건(3.6%)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6> 협의 안전(사업)의 목적별 현황

(단위: 건)

안전(사업)의 목적	빈도(건)	비율(%)
출산 지원	47	13.0
보육 지원	27	7.5
고용(실업) 지원	4	1.1
성인 돌봄	52	14.4
보건의료	26	7.2
소득·빈곤·생계 지원	50	13.9
주거(에너지) 지원	13	3.6
교육(비) 지원	29	8.0
사회적 보상	42	11.6
기타	71	19.7
합계	361	100

○ 협의조정 안전의 목적은 제출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중앙행정기관은 소득·빈곤·생계 지원의 비중이 높으며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득·빈곤·생계 지원, 교육(비) 지원과 성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의 비중이 높으며,
- 기초자치단체는 성인돌봄, 출산 지원, 사회적 보상 안전의 비중이 높음

○ 신설·변경사업의 목적과 대상자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태아(산모)-출산지원’(43건)과 ‘보훈-사회적 보상’(41건) 안전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냄.

- ‘태아-출산 지원’, ‘영유아-보육 지원’, ‘아동청소년-교육 지원’ 등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사업의 목적이 분명한 차별성을 보임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돌봄(16건), 소득·빈곤(17건), 보건의료(5건) 그리고 기타(20건) 등의 영역에 고르게 분산
- 빈곤층은 소득·빈곤·생계 영역에, 장애인은 돌봄(활동지원) 영역, 그리고 보훈대상자는 사회적 보상 영역에 안전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표 2-2-7> 2015년 협의 안건의 목적별, 제출기관별 현황

(단위: 건)

안건(사업)의 목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합계
출산 지원	1	8	38	47
보육 지원	2	7	18	27
고용(실업) 지원	1	0	3	4
성인 돌봄	1	12	39	52
보건의료	1	4	21	26
소득·빈곤생계 지원	4	16	30	50
주거(에너지) 지원	1	2	10	13
교육(비) 지원	0	13	16	29
사회적 보상	1	5	36	42
기타	1	22	48	71
합계	13	89	259	361

<표 2-2-8> 협의 안건(사업)의 목적별, 대상자별 현황

(단위: 건)

구분	태아 (산모)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빈곤층	장애인	여성 가족	보훈	기타
출산	43	0	0	0	0	0	4	0	0	0
보육	0	15	1	0	0	1	0	5	0	5
고용(실업)	0	0	0	2	1	0	0	1	0	0
성인돌봄	0	0	0	0	16	2	31	1	0	2
보건의료	2	2	4	0	5	3	1	3	1	5
소득·빈곤생계	0	0	1	5	17	18	3	5	0	1
주거(에너지)	0	0	0	0	0	9	1	3	0	0
교육(비)	0	0	19	1	0	1	0	5	0	3
사회적보상	0	0	0	0	0	0	0	0	41	1
기타	0	1	3	0	20	5	5	11	0	26

제3절 협의제도 운영과 정보관리체계의 필요성

1.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 안전의 급격한 증가

□ 협의 안전의 증가 추세

- 신설·변경 협의 안전은 시행 초기 2013년에 61건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 협의요청서 접수를 기준으로 2014년에 81건, 2015년 361건
- 2016년은 10월 30일까지 접수된 안전은 약 860건이며, 연말까지 1,100여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안전 증가는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반증이며, 협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 2016년에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신설 또는 변경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 협의 미이행 사업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안전 증가에 따른 정보처리 부담 증가

- 협의 안전이 연간 약 100건을 상회하면서 수작업 방식의 안전 관리와 관련 정보의 처리에 한계를 노출
 - 협의 안전 1개당 최소 4~5건의 공문을 생산하고 있으며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를 합하여 약 260개 협의요청서 제출기관과 공문을 수신 또는 발신하고 있는 상황
- 개별 협의요청서에 포함된 정보의 양과 종류가 매우 많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제기
 - 협의요청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급여·서비스 대상자의 선정기준, 기존 유사제도에 대한 분석, 필요 재정의 추계 결과, 사업의 시행

방안과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신설·변경 협의는 협의 안건에 대한 분석과 판단, 개별 사업의 시행 여부를 좌우하는 정책결정이라는 점에서 세부항목의 정책정보도 소홀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여부를 좌우하는 정책결정은 타당성과 일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활용이 필수

2. 협의제도 운영 및 과정 관리

□ 안건 처리의 일정 관리

- 접수된 협의 안건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건에 대한 체계적 일정관리가 필요
 - 기존의 협의 안건과 유사하거나 별다른 쟁점이 없는 안건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 안건은 6개월 이내에 처리
 -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은 필수적이며, 법률 또는 조례의 재·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처리 기한의 준수는 필수 사항
- 연간 협의 안건의 수를 감안하면 동시에 100~200여건의 안건에 대한 일정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건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필요

□ 안건 처리 절차의 다원화

- 협의 안건의 접수에서 협의 완료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업무 처리 절차가 다원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인력과 기관이 참여
- 접수된 협의 안건의 내용을 일차로 검토하여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 협의

요청서의 보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관리와 처리가 추가됨

○ 접수 안건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토대로 안건의 처리 절차가 3개로 구분됨

- (직권처리) 해당 안건의 내용이 기존에 처리한 안건과 동일한 내용이며, 쟁점이 없는 경우에 사무국 내부 검토를 거쳐 협의 결과를 도출

- (검토회의) 해당 안건이 기존에 처리한 안건과 유사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협의제도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의 검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검토회의에서 논의하여 협의 결과를 도출

- (협의회 상정) 해당 안건이 기존제도와 차별성이 있는 새로운 제도이며, 쟁점이 있는 경우에 지원단 검토, 관련기관 의견을 첨부하여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신설변경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 결과를 도출

○ 안건의 검토 결과 '변경보완'와 '부동의' 의견으로 정리된 경우에 협의요청서 제출기관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

- 변경보완는 안건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변경보완 의견에 대해서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의 동의 필요

-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이 변경보완 또는 부동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협의 미성립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함

○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의 확정 예산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협의 결과의 이행 여부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

□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이견을 해소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쌍방향 정책과정이며, 갈등과 이해관계 대립의 가능성을 내포

○ 쟁점을 포함하고 있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협의 요청기관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관련 기관의 담당자 등의 참여가 필수

- 참여 인력의 결정, 안건 처리의 일정관리, 회의체 운영 등을 위해서 협의 안건 관리와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이 요구

3. 협의 결과의 일관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협의 안건의 특성

- 협의 안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 지방자치단체 안건은 해당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 학습과 확산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안건을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

□ 신설·변경 협의 결과의 일관성 유지

-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협의 안건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협의 결과로 처리되는 것이 필수적임
 - 기존의 협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협의 안건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따라 상이한 결과의 도출이 가능
 -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보편성)과 해당 지역의 특수성(개별성)이라는 상충되는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협의 결과의 도출이 불가피
 -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정보, 기존 제도의 내용과 제도의 운영 결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획득과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

4. 정보의 확산과 공유

□ 대면 접촉 방식을 통한 정보전달의 한계

- 신설·변경 협의제도와 관련한 지침, 협의 절차, 협의 결과 처리, 기존 협의 사례 등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에 전달하고 있음
- 정보의 전달은 주로 간담회, 교육, 컨설팅 등 대면 접촉방식을 주로 활용
 - 대면 접촉은 정보 전달의 내실화라는 장점이 있으나,
 - 반면에 정보 전달의 범위 및 시간적 제약, 업무 담당자의 변경과 전달한 정보의 휘발성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신설·변경 협의 관련 정보의 확산과 공유

-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운영과 안건 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정보의 상시적 활용이 필수
 - 기존 협의 안건의 내용과 협의 결과
 -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의 법령 정보
 -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회보장사업의 정보
-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의 입장에서 안건의 처리 과정을 인지하고, 예측 가능한 처리 일정과 협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 관련 정보의 제공과 협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의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필수

제 3 장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정보 분류체계 및 특성 분석

제1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정보 관리체계 마련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현황

3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 정보 분류체계 및 특성 분석 <

제1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정보 관리체계 마련

1.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 '13년부터 시작된 신설변경사업의 협의조정 제도의 실태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1,233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정보를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와 사회보장제도 유형분류틀을 중심으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DB의 구성체를 제시하였음.

- 협의조정이 필요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정보와 협의조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이 필요함.
- 단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자체에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국민에게는 국가사회보장제도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수 있음.
- 아울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과정 및 속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측면에서 주요 기본 원칙이 필요함.

- 사회보장사업 정보의 분류틀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의 이해 용이성, 호환

성, 전산 적용의 용이성 확보에 효과가 있음.

○ 이는 그간 산발적으로 관리되던 사회보장사업의 정보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표준화된 분류들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안임.

○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범위는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해석과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아울러 표준화된 틀을 규정짓는 것은 다목적성을 지닌 사회보장사업의 분류를 작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목적이 사회보장사업의 명확한 이론적 개념 규정 또는 학술적인 고찰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분류들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사업을 살펴보고, 협의조정 실태를 살펴보는 데 있다면,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의 분류가 필요함.

○ 아울러 모든 사회보장사업에 적합한 분류들은 아니더라도, 그간 다른 연구자들이 활용한 사회보장사업 분류 및 국가정책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 등에 의한 사회보장 사업의 분류들을 구체화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2013년부터 협의조정이 이루어진 사회보장사업의 유형분류들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서 현재 사회보장사업을 개념짓고 유형을 분류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협의조정 사회보장사업을 유형할 수 있는 개념을 추가하여 표준화된 분류들을 도출코자 함.

○ 이를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1-1>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유형분류틀 마련을 위한 검토 흐름

단계	I 단계 사전 검토단계	II 단계 협의조정 사회보장제도 분류	III 단계 협의조정 사회보장제도 분류틀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조정 사업 실태 분석 ○ 사업 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조정 사회보장 사업 특성 검토 ○ 사업속성 특성 분류 ○ 사업속성 유형분류에 대한 검증(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조정 사회보장제도 개념 및 범주화 ○ 분류틀을 기준으로 협의조정 사회보장제도 분류
유형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문헌 개념 검토 ○ 사회보장제도 분류 기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속성 분류 ○ 사업범주 자문 및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틀을 기준으로 협의조정 사회보장제도 분류

□ 사회보장사업 특성분류 관련 기존문헌을 살펴보고, 협의조정 사회보장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틀을 도출함.

- I 단계에서는 협의조정 사업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준거삼아 기존문헌과 사회보장제도 분류기준을 검토함.
- II 단계에서는 협의조정 사회보장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사업속성에 적합한 분류틀을 도출한 후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해 표준화된 분류틀 마련을 위한 자문검토
- 마지막으로 III 단계에서는 협의조정 사회보장제도의 표준 분류틀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분류와 특성분석을 실시함.

□ 협의조정 사회보장사업 분류틀을 상세히 살펴보면 사업식별번호, 사업개요, 사업유형, 사업속성, 협의 및 조정으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음.

- 사업식별을 위해 협의조정 사회보장사업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협의조정 신청기관, 신청유형, 근거 등 사업개요 정보분류 필요
- 사회보장사업의 목적, 대상, 예산에 대한 사업유형구분이 필요하고, 사업

의 급여기준,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원, 정보시스템 사용여부 및 변동내역에 대한 정보분류도 필요함.

-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진행과 협의완료단계별로 정보분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조정단계에서 진행과정과 내역정보의 분류가 필요함.
-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표 3-1-2>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유형분류틀 상세내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개요	식별번호	9개 식별번호 부여
	신청기관	중앙, 지자체, 기안담당자
	신청유형	신청유형(신설&변경)과 변경이력
	사업근거	법률, 조례, 시책, 기타
사업유형	목적 구분	보호돌봄, 요양돌봄, 교육, 건강의료, 생활지원, 고용, 주거, 문화여가, 생계, 재해보상
	대상자 구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전체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 전체성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기타
	복지예산 구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예산 구분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
사업속성	급여기준	자격, 소득, 재산, 자산, 인적
	급여유형	현금, 현물, 바우처
	전달체계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
	재원	국비, 지방비, 기금, 민간자원
	정보시스템	정보연계, 자격확인, 신청, 신청조사, 전산처리, 기타
	변동내역	급여기준, 급여유형, 급여주기, 급여량, 연령, 장애정도, 재원
협의진행	회의단계	접수내역, 협의지원단 회의, 신설변경 협의회
	통보단계	통보내역, 회신내용
협의완료	협의결과	text
	최종결과	송부일
	사유	사업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기타
조정	조정진행	상정일자, 조정일자
	조정내역	결정사항, 사후관리

2. 사업속성 분류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에 대한 정보와 협의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적재되는 정보의 관리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음.

○ 사업의 속성정보는 신설변경이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자체에 대한 정보를

의미함.

- 협의조정 과정정보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 및 조정과정에서 생성되거나 관리되는 정보를 의미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정보를 중심으로 도출한 분류체계는 사업의 속성정보와 협의내역 그리고 조정내역으로 구분 가능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 정보는 관리번호, 사업개요, 유형분류, 급여내역, 전달체계, 자원, 정보시스템, 급여기준·대상자·재원분담·정보시스템 변동사항으로 구성이 가능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협의진행, 협의완료, 사유로 구분됨.
 - 마지막으로 신설변경 사업의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으로 이관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은 조정 진행과 조정내역으로 구성됨.

- 효율적인 사업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9개의 독자적인 관리번호 부여체계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00(연도)+0(부처=1 or 지자체=2) +00(시도 or 부처번호) +0(분류번호 신설=1 or 변경=2) +000(일련번호=접수번호)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설명하면, '15년의 강원도 신설사업인 경우는 15 2 21 1 001 사업관리번호 부여하는 체계를 갖고 이에 대한 고유번호는 부여되어야 함.

- 협의조정을 신청한 신설변경사업의 개요는 중앙부처인지 지자체인지 분류 후, 지자체 유형, 그리고 기안 및 담당자 그리고 신설변경 여부와 관련 근거를 명시함.
 - 신청 주체를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구분하고, 담당자는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하고, 사업의 관련 근거는 법률, 조례, 시책 그리고 기

타로 구분함.

<표 3-1-3>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개요

개요											
기관								신청유형		근거	
중앙		지자체			기안 담당자		사회보장조정과 담당자		신청 유형	변경 이력	사업 추진 근거
부처	과	시도	시군구	담당과	성함	연락처	성함	연락처	신설=1 변경=2	변경 이력 횟수	법률=1 조례=2 시책=3 기타=4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및 대상자별 분류와 예산을 기준으로 한 분류체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속성정보를 분류함.

○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은 보호돌봄, 요양돌봄, 교육, 건강의료, 생활지원, 고용, 주거, 문화여가, 생계 그리고 재해보상으로 구분함.

○ 대상자별 분류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전체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 전체성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로 구분하고, 특징지을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분류함.

○ 예산기준별 사업의 분류는 복지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그리고 사회복지일반으로 분류함.

○ 아울러 보건과 관련된 예산은 보건의료, 건강보험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으로 구분함.

<표 3-1-4>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유형분류

유형분류			
목적별	대상자별	예산기준별	
		080복지	090보건
보호돌봄=1 요양돌봄=2 교육=3 건강의료=4 생활지원=5 고용=6 주거=7 문화여가=8 생계=9 재해보상=10	영유아=1 아동=2 청소년=3 전체아동=4 청년=5 중장년=6 노년=7 전체성인=8 장애인=9 여성=10 다문화=11 기타=12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공적연금=083 보육가족 및 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	보건의료=091 건강보험=092 식품의약품안전=093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내역에 대한 분류는 급여기준, 급여유형으로 구분함.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기준은 사회보장제도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며, 이는 자격, 소득, 재산, 자산, 인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음.

○ 급여의 유형은 현금, 현물, 바우처, 또는 서비스 지급으로 구분 가능하지만, 사업의 특성 때문에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표 3-1-5>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급여유형

급여 기준	급여유형			
	현금지급여부	현물지급여부	바우처 지급여부	서비스 지급여부
자격=1 소득=2 재산=3 자산=4 인적=5	지급=1 미지급=0	지급=1 미지급=0	지급=1 미지급=0	지급=1 미지급=0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내역을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급여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음.

<표 3-1-6>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현금 및 현물

현금			현물			
주기	주기별		지급횟수			현물 지급 규모
	지급횟수	내용 기입 또는 특징기입	주기	주기별 지급횟수	내용 기입 또는 특징기입	천원 상당
주간=1 월간=2 분기=3 반기=4 수시=5 연간=6 일회성=7	n회		주간=1 월간=2 분기=3 반기=4 수시=5 연간=6 일회성=7	n회 지급		규모

<표 3-1-7>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바우처 및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바우처 급여주기			바우처 지급 규모			서비스 급여주기			서비스 지급 규모
주기	주기별 지급 횟수	총 지급 횟수	고정 규모	변동규모 바우처		주기	주기별 지급 횟수	총 지급 횟수	내용 기입
				최소 단위	최대 단위				
주간=1 월간=2 분기=3 반기=4 수시=5 연간=6 일회성=7	n회 지급					주간=1 월간=2 분기=3 반기=4 수시=5 연간=6 일회성=7	n회 지급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주기는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수시, 연간, 일회성으로 구분지을 수 있으며, 주기별 지급횟수와 특성에 대한 정보분류가 필요함.

- 아울러 현물의 경우, 현물규모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규모 산정 필요
- 바우처와 서비스도 제공기주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수시, 연간 그리고 일회성으로 구분가능하며, 주기별 지급횟수와 고정제공과 변동제공으로 구분지어 분류할 수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세부속성 중 전달체계, 특히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기관별 업무분장은 맞춤형 복지급여의 설계와 복지업무 깔때기 현상을 살피는데 중요한 요소임.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신청, 조사, 결정, 지급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는 업무절차를 중심으로 해당기관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각 업무처리 단계별로 읍면동, 시군구, 공공기관, 중앙정부, 교육청 및 학교, 민간기관, 보건소로 구분하여 행정행위 주체를 살펴보았음.

<표 3-1-8>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전달체계

전달체계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
읍면동=1	읍면동=1	읍면동=1	읍면동=1	읍면동=1
시군구=2	시군구=2	시군구=2	시군구=2	시군구=2
공공기관=3	공공기관=3	공공기관=3	공공기관=3	공공기관=3
중앙정부=4	중앙정부=4	중앙정부=4	중앙정부=4	중앙정부=4
교육청 및 학교=5	교육청 및 학교=5	교육청 및 학교=5	교육청 및 학교=5	교육청 및 학교=5
민간기관=6	민간기관=6	민간기관=6	민간기관=6	민간기관=6
보건소=7	보건소=7	보건소=7	보건소=7	보건소=7
신청 없음(자동)=8	도=9	도=9	도=9	도=9
도=9				

-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절차과정에서 유념하여 살펴볼 사항이 복지재정과 관련된 사안임
- 사회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재정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의 매칭을 통해 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띤다.

- 특히, 신설변경 사업의 협의조정과정에서 변화하는 재정의 변화와 구성요건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사안임.
- 이를 위해 복지재원은 주재원과 부재원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성항목으로는 국비, 지방비, 국도비, 도군, 도, 시, 군, 구 그리고 기금출자와 민간재원으로 구분하였음.

<표 3-1-9>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재원

재원				
주 소요재원	비율	부 소요재원	비율	재원 규모
국비=1 지방비=2 국도군=3 광역 시도=4 도군=5 도=6 시=7 군=8 구=9 기금출자=10 민간재원=11 기타=기입		국비=1 지방비=2 국도군=3 광역 시도=4 도군=5 도=6 시=7 군=8 구=9 기금출자=10 민간재원=11 기타=기입		단위(백만원)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세부속성 중 정보시스템 활용여부를 살펴보면 사업의 통합적 이용여부와 함께 향후 시스템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이에 협의조정이 이루어진 사업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여부를 확인하고, 활용분야를 살펴보았음.

<표 3-1-10>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활용 분야
비활용=0 활용=1	정보연계=1, 자격확인=2, 신청=3, 신청조사=4, 전산처리=5, 기타=6

- 협의조정의 대상은 신설 또는 변경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이 중 변경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변경사업의 세부내역은 급여기준의 변동, 대상자 변동, 재원분담 변동 그리고 정보시스템 변동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변경 사회보장제도의 변동사항 중 급여기준 변동사항은 급여기준, 급여유형, 급여주기, 급여량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음.
- 급여기준 관련 주요 항목별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변동이 발생한 항목은 해당 내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변경사업의 급여기준관련 변동 내역을 살펴볼 수 있음.

<표 3-1-11>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급여기준 변동사항

급여기준 변동사항									
급여기준 변동사항		급여유형 변동사항		급여주기 변동사항					
변동여부	기존내역	변동여부	기존내역	변동여부	지급유형	기존 주기	기존	기존 지급횟수	
변동없음=0 변동=1	기입	변동없음=0 변동=1	기입	변동없음=0 변동=1	현금=1 현물=2 바우처=3 서비스=4	일주일=1 월간=2 분기=3 반기=4 수시=5 연간=6 일회성=7	주기별 지급횟수 n회 지급		내용 기입
급여기준 변동사항									
급여량 변동사항									
현금급여 변동사항		현물급여 변동사항		바우처 변동사항		서비스 변동사항		지원규모 변동사항	
변동 여부	기존 현금	변동 여부	기존 현물	변동 여부	기존 바우처	변동 여부	기존 서비스	변동 여부	기존 지원규모
변동 없음=0 변동=1	천원	변동 없음=0 변동=1	천원 상당	변동 없음=0 변동=1	내용 기입	변동 없음=0 변동=1	내용 기입	변동 없음=0 변동=1	n명 기입

□ 변경 사회보장제도의 변동사항 중 대상자 변동사항은 연령기준, 장애정도과 기타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봄.

○ 대상자 변동항목별로 변동여부와 신설 추가여부를 확인하고, 연령기준 변경사항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전체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장애등급별로 확인하여, 대상자 변동여부를 파악함.

<표 3-1-12>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대상자 변동여부

대상자 변동여부									
연령기준 변경사항			장애정도 변경사항			기타 변경사항			
변동여부	기존 내역	세부 내용	변동여부	기존 장애정도	변동여부	기존 특성			
변동 없음=0 변동=1	변경=1 추가=2	없음=0 영유아=1 아동=2 청소년=3 전체아동=4 청년=5 중장년=6 노년=7 전체성인=8	기입	변동 없음=0 변동=1	변경=1 추가=2	없음=0 1급이상=1 2급이상=2 3급이상=3 4급이상=4 5급이상=5 6급이상=6 장애인 전체=7	변동 없음=0 변동=1	변경=1 추가=2	내용 기입

□ 재원분담 변동여부는 소요재원 출처의 변동이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비, 광역시도, 시군구, 기금, 민간재원 그리고 기타로 구분함.

○ 아울러 사업의 소요예산의 변동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변동내역을 추가하여 정보를 분석함.

<표 3-1-13>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들: 재원분담 변동여부

재원분담 변동여부													
소요재원 및 재원규모 변동사항												본인부담금 변동사항	
국비		광역 시도		시군구		기금		민간재원		기타		본인부담금	
변동 여부	변동 금액	변동 여부	변동 금액										
없음 =0 변동 =1	단위 (백만 원)	없음 =0 변동 =1	단위 천원										

□ 변동사업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여부에 대한 확인 후 활용분야의 변동사항을 파악함.

○ 이를 위해 활용분야 변동여부를 살펴보고, 정보연계, 자격확인, 신청, 조사, 전처리 및 기타분야를 중심으로 변동내역을 파악함.

<표 3-1-14>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들: 정보시스템 변동여부

정보시스템 변동여부			
활용여부 변동사항		활용분야 변동사항	
변동여부	기존 활용여부	변동여부	기존 활용분야
변동없음=0 변동=1	비활용=0 활용=1	변동없음=0 변동=1	정보연계=1 자격확인=2 신청=3 신청조사=4 전처리=4 기타=5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협의진행과 협의완료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협의진행은 회의단계와 변경보완 통보 및 회신으로 구분가능하며, 협의완료는 협의결과와 사유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지어 설정함.

- 협의진행과정의 회의단계는 접수일, 협의지원단 회의과 신설변경 협의회 접수일 및 최종심사일로 구성됨.
- 협의지원단 회의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세부내역을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검토를 하는 단계이며, 이를 토대로 신설변경 협의회를 거침.

<표 3-1-15>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협의진행

협의진행								
회의단계						변경보완 통보 및 회신		
접수	협의지원단 회의		접수	신설변경 협의회		통보일	회신내용	
00년00월00일	1차 심사일	최종 심사일	00년00월00일	1차 심사일	최종 심사일	00년00월00일	회신일	회신파일 유무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완료에 대한 부분은 협의결과 및 사유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됨.
- 협의결과는 동의의 세부내역으로 변경보완 후 동의, 부동의, 대안권고, 변경보완, 반려, 철회 그리고 사업종료로 구분됨.
- 협의결과에 대한 사유는 최종결과 송부일이 명시되며,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기타사항으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음.

<표 3-1-16>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의결과		사유						
text입력	결과	최종결과 송부일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사유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 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기타
	동의=1 변경보완 후 동의=2 부동의=3 대안권고=4 변경보완(진행중인 절차)=5 반려=6 철회=7 사업종료=8	00년00월 00일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1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5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7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17	사회보장 제도 중장기 발전전략 부합여부=1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여부=5 사업시행에 따른 증부,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7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17	전달체계의 과부화/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1 수혜자 접근성(편의성)=5 급여 제공의 적시성=7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17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1 재정집행의 효율성=2	특수취약 계층의 복지수요 반영=1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2 협의대상 아님 또는 부적절=7

□ 신설변경사업의 협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조정에 대한 세부정보는 조정진행과 조정내역으로 구분됨.

○ 조정진행은 상정일자와 조정일자 그리고 조정내역은 주요 결정사항과 사후관리 내역이 기입되어, 조정관련 세부정보를 0분석함.

<표 3-1-17>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류틀: 조정

조정			
조정진행		조정내역	
상정일자	조정일자	결정사항	사후관리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현황

□ 협의조정을 거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현황분석을 위해 연도, 기관유형, 사업근거, 사업목적, 사업대상자, 사업예산 등 다양한 속성에 따라 빈도 분석을 실시 함³⁾

○ 이를 통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특성에 따른 현황과 변동추이 탐색 함.

1.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특성분석

1) 연도별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현황

□ 연도별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4년간의 신설·변경 협의를 신청한 사회보장사업은 총 1,233건으로, '13년도부터 '16년까지 각각 61건(4.9%), 81건(6.6%), 361건(29.3%), 730건(59.2%)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

- 협의 요청 사업을 신설과 변경으로 분류하여 보면 '13년에는 신설 37건(, 변경 24건(39.3%), '14년에는 신설 56건(69.1%), 변경 25건(30.9%), '15년에는 신설 246건(68.1%), 변경 115건(31.9%), '16년에는 신설 449건(61.5%), 변경 281건(38.5%)로 신설 사업이 변경 사업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요청주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1233건 중 중앙부처가 87건(7.1%), 지자체가 1,146(92.9%)로 지자체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음.

- 지자체는 매년 꾸준히 협의 건수가 증가한 반면 중앙부처는 '13년에 30건, '14년에 14건, '15년에 13건, '16년에 30건으로 중간에 협의 건수가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협의요청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중앙부처의 경우 ‘변경’이 58건(66.7%)로 ‘신설’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냄.
- 지자체의 경우 ‘신설’이 760건(61.6%)로 ‘변경’보다 높은 빈도를 보임.

<표 3-2-1> 연도별 기관 유형 간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현황

(단위: 건, %)

기관 유형	13			14			15			16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중앙	12 (40.0)	18 (60.0)	30 (100)	6 (42.9)	8 (57.1)	14 (100)	8 (61.5)	5 (38.5)	13 (100)	3 (10.0)	27 (90.0)	30 (100)	87 (7.1)
지자체	25 (80.6)	6 (19.4)	31 (100)	50 (74.6)	17 (25.4)	67 (100)	238 (68.4)	110 (31.6)	348 (100)	446 (63.7)	254 (36.3)	700 (100)	1146 (92.9)
합계	37 (60.7)	24 (39.3)	61 (4.9)	56 (69.1)	25 (30.9)	81 (6.6)	246 (68.1)	115 (31.9)	361 (29.3)	449 (61.5)	281 (38.5)	730 (59.2)	1233 (100)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현황을 17개 시도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3년 부터 신설·변경 협의 요청이 많았던 광역자치단체는 경기(171건), 전북(131건), 전남(123건), 경남(94건), 인천(91건)이었음.
- 반면 협의 요청이 가장 적었던 광역자치단체는 제주(15건), 세종(17건), 울산(19건), 대구(19건), 대전(28건)으로 나타남.

<표 3-2-2> 17개 시도의 연도별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현황

(단위: 건, %)

시도	2013			2014			2015			2016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중앙	12 (32.4)	18 (75.0)	30 (49.2)	6 (10.7)	8 (32.0)	14 (17.3)	8 (3.3)	5 (4.3)	13 (3.6)	3 (.7)	27 (9.6)	30 (41)	87 (7.1)
서울	3 (8.1)	0 (0)	3 (4.9)	6 (10.7)	1 (4.0)	7 (8.6)	7 (2.8)	5 (4.3)	12 (3.3)	26 (5.8)	13 (4.6)	39 (5.3)	61 (4.9)
광주	0 (0)	0 (0)	0 (0)	1 (1.8)	1 (4.0)	2 (2.5)	5 (2.0)	3 (2.6)	8 (2.2)	14 (3.1)	6 (2.1)	20 (2.7)	30 (2.4)
대구	1 (2.7)	0 (0)	1 (1.6)	0 (0)	2 (8.0)	2 (2.5)	4 (1.6)	2 (1.7)	6 (1.7)	7 (1.6)	3 (1.1)	10 (1.4)	19 (1.5)
대전	0 (0)	0 (0)	0 (0)	0 (0)	0 (0)	0 (0)	7 (2.8)	1 (0.9)	8 (2.2)	9 (2.0)	11 (3.9)	20 (2.7)	28 (2.3)
부산	0 (0)	2 (8.3)	2 (3.3)	1 (1.8)	0 (0)	1 (1.2)	4 (1.6)	3 (2.6)	7 (1.9)	35 (7.8)	24 (8.5)	59 (8.1)	69 (5.6)
울산	1 (2.7)	0 (0)	1 (1.6)	0 (0)	0 (0)	0 (0)	2 (0.8)	3 (2.6)	5 (1.4)	4 (.9)	9 (3.2)	13 (1.8)	19 (1.5)
인천	4 (10.8)	1 (4.2)	5 (8.2)	0 (0)	0 (0)	0 (0)	22 (8.9)	7 (6.1)	29 (8.0)	41 (9.1)	16 (5.7)	57 (7.8)	91 (7.4)
강원	0 (0)	0 (0)	0 (0)	11 (19.6)	0 (0)	11 (13.6)	8 (3.3)	0 (0)	8 (2.2)	29 (6.5)	13 (4.6)	42 (5.8)	61 (4.9)
경기	0 (0)	0 (0)	0 (0)	8 (14.3)	2 (8.0)	10 (12.3)	47 (19.1)	15 (13.0)	62 (17.2)	60 (13.4)	39 (13.9)	99 (13.6)	171 (13.9)
경남	2 (5.4)	0 (0)	2 (3.3)	6 (10.7)	3 (12.0)	9 (11.1)	21 (8.5)	6 (5.2)	27 (7.5)	36 (8.0)	20 (7.1)	56 (7.7)	94 (7.6)
경북	2 (5.4)	0 (0)	2 (3.3)	1 (1.8)	1 (4.0)	2 (2.5)	8 (3.3)	13 (11.3)	21 (5.8)	32 (7.1)	13 (4.6)	45 (6.2)	70 (5.7)
전남	1 (2.7)	1 (4.2)	2 (3.3)	7 (12.5)	2 (8.0)	9 (11.1)	26 (10.6)	10 (8.7)	36 (10.0)	45 (10.0)	31 (11.0)	76 (10.4)	123 (10.0)
전북	2 (5.4)	0 (0)	2 (3.3)	2 (3.6)	0 (0)	2 (2.5)	41 (16.7)	12 (10.4)	53 (14.7)	56 (12.5)	18 (6.4)	74 (10.1)	131 (10.6)
충남	1 (2.7)	1 (4.2)	2 (3.3)	2 (3.6)	2 (8.0)	4 (4.9)	13 (5.3)	14 (12.2)	27 (7.5)	30 (6.7)	18 (6.4)	48 (6.6)	81 (6.6)
충북	2 (5.4)	0 (0)	2 (3.3)	3 (5.4)	2 (8.0)	5 (6.2)	14 (5.7)	13 (11.3)	27 (7.5)	14 (3.1)	18 (6.4)	32 (4.4)	66 (5.4)
세종	6 (16.2)	1 (4.2)	7 (11.5)	2 (3.6)	1 (4.0)	3 (3.7)	6 (2.4)	0 (0)	6 (1.7)	1 (.2)	0 (0)	1 (.1)	17 (1.4)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3 (1.2)	3 (2.6)	6 (1.7)	7 (1.6)	2 (.7)	9 (1.2)	15 (1.2)
	27	24	61	56	25	81	246	115	361	449	281	730	1233

2) 사업근거별 신설·변경 사회복지사업 현황

□ 사회복지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근거를 법률, 조례, 시책,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4년간의 신설·변경이 이루어진 1,233건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추진 근거를 살펴보면 ‘법률’ 631건(51.2%), ‘조례’ 558건(45.2%), 기타’ 38건(3.1%), ‘시책’ 6건(0.5%)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임.

○ 중앙부처의 87개 신설·변경 복지사업은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이 기획되었고 집행되고 있음.

○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13년에서 ‘15년까지는 ‘법률’에 근거한 요청 건이 ‘조례’보다 많았으나 ‘16년에는 법률 248건, 조례 423건으로 조례에 근거한 요청 건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3> 기관유형별 집단 간 사업근거별 분류 현황

(단위: 건, %)

사업 근거	2013			2014			2015			2016			합계
	중앙부처	지자체	합계	중앙부처	지자체	합계	중앙부처	지자체	합계	중앙부처	지자체	합계	
법률	30 (492)	25 (395)	55 (100)	14 (173)	47 (887)	61 (100)	13 (36)	224 (949)	237 (100)	30 (4.1)	248 (904)	278 (100)	631 (51.2)
조례	0 (0)	5 (100)	5 (100)	0 (0)	15 (100)	15 (100)	0 (0)	115 (100)	115 (100)	0 (0)	423 (100)	423 (100)	558 (45.2)
시책	0 (0)	0 (0)	0 (0)	0 (0)	1 (100)	1 (100)	0 (0)	1 (100)	1 (100)	0 (0)	4 (100)	4 (100)	6 (0.5)
기타	0 (0)	1 (100)	1 (100)	0 (0)	4 (100)	4 (100)	0 (0)	8 (100)	8 (100)	0 (0)	25 (100)	25 (100)	38 (3.1)
합계	30 (492)	31 (508)	61 (4.9)	14 (173)	67 (827)	81 (6.6)	13 (3.6)	348 (964)	361 (293)	30 (4.1)	700 (959)	730 (592)	1233 (100)

3) 사업목적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현황

□ 신설·변경이 이루어진 사회사회보장사업을 목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보호돌봄’, ‘요양돌봄’, ‘교육’, ‘건강의료’, ‘생활지원’, ‘고용’, ‘주거’, ‘문화여가’, ‘생계’, ‘재해보상’, ‘기타’의 11개 범주로 분류하였음.

- ‘보호돌봄’의 범주에는 출산장려금, 산후조리 관련 사업, 보육 관련 사업 등 영유아 및 출산 관련 돌봄 사업이 해당됨
- ‘요양돌봄’은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노인장애인과 노인 관련 돌봄 사업이 해당됨
- ‘교육’은 교복구입비, 급식비, 교육비 지원 사업이 대표적임
- ‘건강의료’는 예방접종 지원, 건강검진 지원,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이 해당됨
- ‘생활지원’은 해당 대상에 대한 생활에 필요한 현금, 현물, 서비스를 지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결혼자금융자사업, 독거노인 밀반찬 지원 사업 등이 있음
- ‘고용’의 범주에는 청년인턴제 지원사업, 자활 사업지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이 포함됨
- ‘주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표적이며 난방비 및 전기요금 지원, 상하수도 지원 등 주거 관련 지원 사업이 해당됨
- ‘문화여가’는 문화여가 생활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 청 소년 문화카드, 여성 농어업인 바우처 사업이 대표적임
- ‘생계’는 저소득주민이나 노인에 대한 수당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제 도 등이 해당됨
- ‘재해보상’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당 및 위로금이 대표적임

□ 사회보장사업 목적을 분류기준으로 협의조정이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회보 장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4년간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은 총 1,233건으로, 목적별로 살펴보면 ‘보호돌봄’ 253건(20.5%), ‘생활지원’ 246건(20.0%), ‘재해보상’ 182건(14.8%), ‘건강의료’ 119건(9.7%)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임.
- 반면에 ‘고용’ 17건(1.4%), 문화여가 31건(2.5%) 등은 낮은 빈도를 보였음.
- 즉,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은 보호돌봄, 생활지원관련 사업이 많았으나, 고용과 문화관련 협의요청은 적었음.

<표 3-2-4> 연도별 기관유형 간 사업목적별 분류 현황

(단위: 건, %)

사업목적	2013			2014			2015			2016			합계
	중앙부처	지자체	합계	중앙부처	지자체	합계	중앙부처	지자체	합계	중앙부처	지자체	합계	
보호돌봄	2 (25.0)	6 (75.0)	8 (100)	3 (14.3)	18 (85.7)	21 (100)	5 (5.6)	84 (94.4)	89 (100)	7 (5.2)	128 (94.8)	135 (100)	253 (20.5)
요양돌봄	3 (60.0)	2 (40.0)	5 (100)	1 (12.5)	7 (87.5)	8 (100)	0 (0)	14 (100)	14 (100)	3 (4.0)	72 (96.0)	75 (100)	102 (8.3)
교육	2 (100)	0 (0)	2 (100)	3 (50.0)	3 (50.0)	6 (100)	0 (0)	23 (100)	23 (100)	3 (5.7)	50 (94.3)	53 (100)	84 (6.8)
건강의료	8 (61.5)	5 (38.5)	13 (100)	1 (7.7)	12 (92.3)	13 (100)	1 (3.6)	27 (96.4)	28 (100)	2 (3.1)	63 (96.9)	65 (100)	119 (9.7)
생활지원	4 (30.8)	9 (69.2)	13 (100)	0 (0)	4 (100)	4 (100)	1 (1.3)	74 (98.7)	75 (100)	8 (5.2)	146 (94.8)	154 (100)	246 (20.0)
고용	1 (100)	0 (0)	1 (100)	1 (100)	0 (0)	1 (100)	1 (33.3)	2 (66.7)	3 (100)	1 (8.3)	11 (91.7)	12 (100)	17 (1.4)
주거	2 (40.0)	3 (60.0)	5 (100)	1 (100)	0 (0)	1 (100)	1 (11.1)	8 (88.9)	9 (100)	1 (2.1)	46 (97.9)	47 (100)	62 (5.0)
문화여가	3 (100)	0 (0)	3 (100)	0 (0)	3 (100)	3 (100)	0 (0)	19 (100)	19 (100)	0 (0)	6 (100)	6 (100)	31 (2.5)
생계	4 (100)	0 (0)	4 (100)	3 (13.6)	19 (86.4)	22 (100)	2 (6.5)	29 (93.5)	31 (100)	1 (3.6)	27 (96.4)	28 (100)	85 (6.9)
재해보상	0 (0)	0 (0)	0 (100)	0 (0)	0 (0)	0 (100)	1 (2.4)	41 (97.6)	42 (100)	2 (1.4)	138 (98.6)	140 (100)	182 (14.8)
기타	1 (14.3)	6 (85.7)	7 (100)	1 (50.0)	1 (50.0)	2 (100)	1 (3.6)	27 (96.4)	28 (100)	2 (13.3)	13 (86.7)	15 (100)	52 (4.2)
전체	30 (49.2)	31 (50.8)	61 (4.9)	14 (17.3)	67 (82.7)	81 (6.6)	13 (3.6)	348 (96.4)	361 (29.3)	30 (4.1)	700 (95.9)	730 (59.2)	1233 (100)

○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구분하여 보면 중앙부처는 ‘보호돌봄’ 17건(19.5%), ‘생활지원’ 13건(13.9%), ‘건강의료’ 12건(13.8%), ‘생계’ 10건(11.5%), ‘교육’ 8건(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는 ‘보호돌봄’ 236건(20.6%), ‘생활지원’ 233건(20.3%), ‘재해보상’ 179건(15.6%), ‘건강의료’ 107건(9.3%), ‘요양돌봄’ 95건(8.3%)의 순으로 나타남

–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보호돌봄’과 ‘생활지원’, ‘건강의료’ 영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아동 청소년	1 (50)	1 (50)	2 (100)	0 (0)	4 (100)	4 (100)	3 (5.2)	55 (94.8)	58 (100)	5 (5.8)	81 (94.2)	86 (100)	150 (12.2)
고령자 노인	5 (50)	5 (50)	10 (100)	0 (0)	25 (100)	25 (100)	0 (0)	56 (100)	56 (100)	1 (1.0)	104 (99.0)	105 (100)	196 (15.9)
장애인	3 (100)	0 (0)	3 (100)	0 (0)	11 (100)	11 (100)	0 (0)	47 (100)	47 (100)	4 (5.1)	74 (94.9)	78 (100)	139 (11.3)
보훈 대상자	0 (0)	1 (100)	1 (100)	0 (0)	4 (100)	4 (100)	1 (2.5)	39 (97.5)	40 (100)	0 (0)	141 (100)	141 (100)	186 (15.1)
여성가족	4 (57.1)	3 (42.9)	7 (100)	4 (23.5)	13 (76.5)	17 (100)	5 (6.5)	72 (93.5)	77 (100)	8 (5.0)	152 (95.0)	160 (100)	261 (21.2)
다문화 외국인	0 (0)	1 (100)	1 (100)	1 (100)	0 (0)	1 (100)	0 (0)	9 (100)	9 (100)	1 (3.0)	32 (97.0)	33 (100)	44 (3.6)
저소득	10 (58.8)	7 (41.2)	17 (100)	5 (45.5)	6 (54.5)	11 (100)	2 (5.0)	38 (95.0)	40 (100)	5 (7.4)	63 (92.6)	68 (100)	136 (11.0)
산재 근로자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1 (100)	2 (100)	0 (0)	2 (100)	3 (0.2)
농어업인	0 (0)	0 (0)	0 (0)	1 (50)	1 (50)	2 (100)	0 (0)	2 (100)	2 (100)	1 (16.7)	5 (83.3)	6 (100)	10 (0.8)
특수 대상기타	7 (35.0)	13 (65.0)	20 (100)	3 (50)	3 (50)	6 (100)	1 (3.2)	30 (96.8)	31 (100)	3 (5.9)	48 (94.1)	51 (100)	108 (8.8)
합계	30 (49.2)	31 (50.8)	61 (49)	14 (17.3)	67 (82.7)	81 (66)	13 (3.6)	348 (96.4)	361 (29.3)	30 (4.1)	700 (95.9)	730 (59.2)	1233 (100)

- 대상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의 경우 ‘13년과 ‘14년에는 각각 2건과 4건으로 매우 적었던 반면 ‘15년과 ‘16년에는 58건과 86건으로 크게 증가함
- ‘고령자·노인’과 ‘여성·가족’, ‘저소득’ 대상의 사업은 ‘13년~’16년까지 매해 높은 비율을 보임
 - ‘보훈대상자’는 ‘13년 1건, ‘14년 4건, ‘15년 39건, ‘16년 141건으로 전 체적인 협의 안건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
-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여성·가족’이 각각 21건(24.1%), 240건 (20.9%)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에 비하여 ‘저소득(22건, 25.3%)’, ‘특수대상·기타(14건, 16.1%)’의 빈도가 높았으며 지자체에서는 중앙부처에 비하여 ‘고령자·노인(190건, 16.6%)’과 ‘보훈대상자(185, 16.1%)’의 빈

도가 높게 나타나 기관 유형에 다빈도 사업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남

5) 복지사업의 예산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현황

□ 예산항목을 기준으로 신설·변경 사회사회보장사업의 실태를 살펴봄.

○ 복지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으로 분류하고 있음

○ 보건 예산은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으로 분류하여 편성함

□ 복지예산 항목과 보건예산 항목을 기준으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복지예산 항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보육가족 및 여성’ 319건(25.9%), ‘취약계층지원’ 257건(20.8%), ‘노인청소년’ 251건(20.4%), ‘보훈’ 186건(15.1%)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냄.

○ 보건 예산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가 67건으로 ‘건강보험(9건)’과 ‘식품의약품안전(1건)’ 절대 다수를 차지함

○ 중앙부처의 예산 분류에서는 ‘취약계층지원(26건)’과 ‘보육가족 및 여성(22건)’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예산 분류에서는 ‘보육가족 및 여성(297건)’, ‘취약계층지원(231건)’, ‘보훈(184건)’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6> 기관유형별 신설 및 변경여부 간 사업예산 현황

(단위 : 건, %)

사업예산	중앙부처			지자체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기초생활보장	0 (0)	1 (100)	1 (100)	8 (80)	2 (20)	10 (100)	11 (0.9)
취약계층지원	10 (38.5)	16 (61.5)	26 (100)	155 (67.1)	76 (32.9)	231 (100)	257 (20.8)
보육가족 및 여성	4	18	22	183	114	297	319

	(18.2)	(81.8)	(100)	(61.6)	(38.4)	(100)	(25.9)
노인청소녀	3 (30.0)	7 (70.0)	10 (100)	190 (78.8)	51 (21.2)	241 (100)	251 (20.4)
노동	1 (20.0)	4 (80.0)	5 (100)	12 (85.7)	2 (14.3)	14 (100)	19 (1.5)
보훈	0 (0)	2 (100)	2 (100)	70 (38.0)	114 (62.0)	184 (100)	186 (15.1)
주택	1 (33.3)	2 (66.7)	3 (100)	27 (75.0)	9 (25.0)	36 (100)	39 (3.2)
사회복지일반	2 (33.3)	4 (66.7)	6 (100)	58 (85.3)	10 (14.7)	68 (100)	74 (6.0)
보건의료	6 (66.7)	3 (33.3)	9 (100)	51 (87.9)	7 (70.0)	58 (100)	67 (5.4)
건강보험	2 (66.7)	1 (33.3)	3 (100)	4 (66.7)	2 (33.3)	6 (100)	9 (100)
식품의약품안전	0 (0)	0 (0)	0 (0)	1 (100)	0 (0)	1 (100)	1 (0.1)
합계	29 (33.3)	58 (66.7)	87 (7.1)	759 (66.2)	387 (33.8)	1146 (92.9)	1233 (100)

2.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급여특성에 따른 현황분석

1) 연도별 신설 및 변경여부 간 기관유형에 따른 급여기준 현황

□ 사회보장사업의 급여기준은 ‘자격’, ‘소득’, ‘재산’, ‘자산’, ‘인적’, ‘기타’의 6가지로 분류함.

○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등급 판정자’, ‘국가보훈 대상자’와 같이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임

○ ‘자산’의 경우 ‘소득’과 ‘재산’ 모두를 급여 기준으로 삼는 형태임

○ ‘인적’ 기준은 급여 대상자 개인에 귀속하는 특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결혼이민여성’, ‘농어촌 거주 여성’, ‘65세 이상 노인’과 같은 경우임

○ 단, 각각의 기준을 혼합하는 형태의 급여 기준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요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통계치로 작성함

<표 3-2-7> 연도별 신설 및 변경여부 간 기관유형에 따른 급여기준 현황

분류	급여기준	2013			2014			2015			2016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중앙 부처	자격	1 (16.7)	5 (83.3)	6 (100)	1 (50)	1 (50)	2 (100)	6 (75)	2 (25)	8 (100)	3 (23.1)	10 (76.9)	13 (100)	29 (33.3)
	소득	4 (44.4)	5 (55.6)	9 (100)	0 (0)	2 (100)	2 (100)	2 (66.7)	1 (33.3)	3 (100)	0 (0)	3 (100)	3 (100)	17 (19.5)
	재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자산	2 (100)	0 (0)	2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3)
	인적	5 (38)	8 (62)	13 (100)	3 (37.5)	5 (62.5)	8 (100)	0 (0)	2 (100)	2 (100)	0 (0)	14 (100)	14 (100)	37 (42.5)
	기타	0 (0)	0 (0)	0 (0)	2 (100)	0 (0)	2 (100)	0 (0)	0 (0)	0 (0)	0 (0)	0 (0)	0 (0)	2 (2.3)
	합계	12 (40.0)	18 (60.0)	30 (34)	6 (42.9)	8 (57.1)	14 (16)	8 (61.5)	5 (38.5)	13 (15)	3 (10)	27 (90)	30 (34)	87 (100)
지 자 체	자격	7 (77.8)	2 (22.2)	9 (100)	14 (87.5)	2 (12.5)	16 (100)	133 (68.6)	61 (31.4)	194 (100)	147 (62.8)	87 (37.2)	234 (100)	453 (39.5)
	소득	2 (66.7)	1 (33.3)	3 (100)	2 (100)	0 (0)	2 (100)	28 (73.7)	10 (26.3)	38 (100)	29 (67.4)	14 (32.6)	43 (100)	86 (7.5)
	재산	1 (100)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1 (100)	2 (0.2)
	자산	1 (100)	0 (0)	1 (100)	0 (0)	1 (100)	1 (100)	5 (71.4)	2 (28.6)	7 (100)	1 (25.0)	3 (75.0)	4 (100)	13 (1.1)
	인적	11 (78.6)	3 (21.4)	14 (100)	34 (72.3)	13 (27.7)	47 (100)	71 (65.7)	37 (34.3)	108 (100)	269 (64.4)	149 (35.6)	418 (100)	587 (51.2)
	기타	3 (100)	0 (0)	3 (100)	0 (0)	1 (100)	1 (100)	1 (100)	0 (0)	1 (100)	0 (0)	0 (0)	0 (0)	5 (0.4)
	합계	25 (40.0)	6 (60.0)	31 (27)	50 (74.6)	17 (25.4)	67 (5.8)	238 (68.4)	110 (31.6)	348 (30.3)	446 (100)	254 (90.0)	700 (61.0)	1146 (100)

□ 급여기준을 중심으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인적’, ‘자격’, ‘소득’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임.

-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급여기준은 ‘인적’ 37건(42.5%), ‘자격’ 29건(33.3%), ‘소득’ 17건(19.5%)의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각각 ‘인적’ 587건

(51.2%), ‘자격’ 453건(39.5%), ‘소득’ 86건(7.5%)으로 나타남

- ‘재산’만을 급여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중앙부처 0건(0%), 지자체 2건(0.2%)으로 거의 없었으며,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자산’의 경우도 중앙부처 2건(2.3%), 지자체 13건(1.1%)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임.

2) 급여유형을 기준으로 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실태

- 급여유형은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의 5가지 형태로 분류함
 - 사업에 따라 한 사업이 여러 형태의 급여 유형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였으며 이를 중복 체크하여 통계를 작성함
 - 동일 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여러 유형의 급여를 동시에 지급하거나 선택하게 하는 경우와 급여 기준에 따라 다른 유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급여유형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사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회보장사업의 급여유형은 현금, 현물, 바우처, 사회서비스로 구분하되, 하나의 사업이 복합적인 유형을 갖고 있을 경우 복수의 유형을 체크토록 하였음.
 - 따라서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의 수는 1,233개 이지만, 급여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1,275건으로 집계되었음.
 - 이는 중앙부처 88건(6.9%), 지자체 1,187건(93.1%)으로 구분됨.
- 중앙부처의 급여유형별 빈도는 ‘현금’ 38건(43.2%), ‘서비스’ 28건(31.8%), ‘바우처’ 13건(14.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급여유형별 빈도는 ‘현금’ 777건(65.5%), ‘현물’ 145건(12.2%), ‘서비스’ 142건(12.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현금’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바우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지자체에서는 ‘바우처’보다 ‘현물’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음.

<표 3-2-8> 연도별 신설 및 변경여부 간 기관유형에 따른 급여유형 현황(중복체크)

(단위 : 건, %)

분류	급여 유형	2013			2014			2015			2016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중앙부처	현금	6 (50.0)	6 (50.0)	12 (100)	3 (60.0)	2 (40.0)	5 (100)	6 (85.7)	1 (14.3)	7 (100)	1 (7.1)	13 (92.9)	14 (100)	38 (43.2)
	현물	0 (0)	2 (100)	2 (100)	0 (0)	1 (100)	1 (100)	1 (100)	0 (0)	1 (100)	1 (50.0)	1 (50.0)	2 (100)	6 (6.8)
	바우처	4 (66.7)	2 (33.3)	6 (100)	0 (0)	2 (100)	2 (100)	1 (33.3)	2 (66.7)	3 (100)	1 (50.0)	1 (50.0)	2 (100)	13 (14.8)
	서비스	2 (20.0)	8 (80.0)	10 (100)	1 (25.0)	3 (75.0)	4 (100)	1 (50.0)	1 (50.0)	2 (100)	0 (0)	12 (100)	12 (100)	28 (31.8)
	기타	0 (0)	0 (0)	0 (0)	2 (100)	0 (0)	2 (100)	0 (0)	1 (100)	1 (100)	0 (0)	0 (0)	0 (0)	3 (3.4)
	합계	12 (40.0)	18 (60.0)	30 (34.1)	6 (42.9)	8 (57.1)	14 (15.9)	9 (0.6)	5 (35.7)	14 (15.9)	3 (10.0)	27 (90.0)	30 (34.1)	88 (6.9)
지자체	현금	13 (76.5)	4 (23.5)	17 (100)	37 (74.0)	13 (26.0)	50 (100)	156 (64.7)	85 (35.3)	241 (100)	262 (55.9)	207 (44.1)	469 (100)	777 (65.5)
	현물	3 (75.0)	1 (25.0)	4 (100)	2 (100)	0 (0)	2 (100)	31 (86.1)	5 (13.9)	36 (100)	85 (82.5)	18 (17.5)	103 (100)	145 (12.2)
	바우처	2 (100)	0 (0)	2 (100)	6 (85.7)	1 (14.3)	7 (100)	30 (62.5)	18 (37.5)	48 (100)	38 (62.3)	23 (37.7)	61 (100)	118 (9.9)
	서비스	4 (80.0)	1 (20.0)	5 (100)	5 (71.4)	2 (28.6)	7 (100)	33 (86.8)	5 (13.2)	38 (100)	77 (83.7)	15 (16.3)	92 (100)	142 (12.0)
	기타	3 (100)	0 (0)	3 (100)	0 (0)	0 (0)	0 (0)	1 (50.0)	1 (50.0)	2 (100)	0 (0)	0 (0)	0 (0)	5 (0.4)
	합계	25 (80.6)	6 (19.4)	31 (2.6)	50 (75.8)	16 (24.2)	66 (5.6)	251 (68.8)	114 (31.2)	365 (30.7)	462 (63.7)	263 (36.3)	725 (61.1)	1187 (93.1)

3.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소요재원 구분 따른 현황분석

□ 사회사회보장사업의 소요 재원을 기준으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보장사업의 소요재원은 주소요 재원과 주소요 재원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준은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유형을 구분함.
- 복지사업이 매칭 예산인 경우로서 매칭 비율과 상관없이 상위 기관의 예산을 주소요재원으로 간주하여 통계를 작성함⁴⁾

1) 중앙부처의 소요재원 현황

<표 3-2-9> 중앙부처의 소요재원 구분에 따른 재원구성 현황

(단위 : 건, %)

재원구성	주소요재원			주소요재원1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국비	22 (31.9)	47 (68.1)	69 (79.3)	0 (0)	0 (0)	0 (0)
광역시도	0 (0)	1 (100)	1 (1.1)	6 (28.6)	15 (71.4)	21 (51.2)
시군구	0 (0)	0 (0)	0 (0)	4 (25.0)	12 (75.0)	16 (39.0)
기금출자	3 (42.9)	4 (57.1)	7 (8.0)	0 (0)	0 (0)	0 (0)
민간재원	0 (0)	1 (100)	1 (1.1)	0 (0)	1 (100)	1 (2.4)
기타	4 (44.4)	5 (55.6)	9 (10.3)	2 (66.7)	1 (33.3)	3 (7.3)
합계	29 (33.3)	58 (66.7)	87 (100)	12 (29.3)	29 (70.7)	41 (100)

□ 중앙부처의 소요재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음

- 4년간의 중앙부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총 87건 중 소요재원으로 매칭 예산을 설정한 사례는 41건으로 나타남
 - 매칭 예산의 비율이 전체의 47.1%로서 이는 시도(32.3%)와 시군구(3.2%)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임

4) 예를 들어, 광역시도 30%와 시군구 70%의 매칭 예산인 경우 광역시도비를 주소요재원으로, 시군구비를 주소요재원으로 작성함

- 주 소요재원의 빈도는 국비가 69건(79.3%)로 가장 높았으며, 부소요재원은 광역시도 21건(51.2%), 시군구 16건(39.0%) 순으로 높음

2) 시도의 소요재원 현황

□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장사업의 소요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 광역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복지장제도 총 247건의 주 소요재원의 빈도는 광역시도가 208건(84.2%)로 가장 높았으며, 부소요재원으로는 시군구 재원이 79.7%(63건)로 높은 비중을 보임.

<표 3-2-10> 지자체(시도)의 소요재원 구분에 따른 재원구성 현황

(단위 : 건, %)

재원구성	주소요재원			부소요재원1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국비	4 (66.7)	2 (33.3)	6 (2.4)	0 (0)	0 (0)	0 (0)
광역시도	143 (68.8)	65 (31.3)	208 (84.2)	4 (80.0)	1 (20.0)	5 (6.3)
시군구	13 (72.2)	5 (27.8)	18 (7.3)	36 (57.1)	27 (42.9)	63 (79.7)
기금출자	1 (100)	0 (0)	1 (0.4)	1 (100)	0 (0)	1 (1.3)
민간재원	1 (100)	0 (0)	1 (0.4)	4 (80.0)	1 (20.0)	5 (6.3)
기타	8 (61.5)	5 (38.5)	13 (5.3)	4 (80.0)	1 (20.0)	5 (6.3)
합계	170 (68.8)	77 (31.2)	247 (100)	49 (62.0)	30 (38.0)	79 (100)

3) 시군구의 소요재원 현황

□ 시군구의 소요재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음

○ 4년간의 시군구 신설·변경 사회복지장제도 총 899건 중 소요재원으로 매칭 예산을 설정한 사례는 29건으로 나타남

- 주 소요재원의 빈도는 시군구가 853건(94.9%)로 가장 높았으며, 부소요재원 역시 시군구 예산이 18건(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시군구의 경우 매칭예산을 활용하는 비율이 3.2%로 중앙부처(47.1%)와 시도(31.9%)에 비하여 매우 낮아 자체 예산만을 사용하는 사업 비율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음

<표 3-2-11> 지자체(시군구)의 소요재원 구분에 따른 재원구성 현황

(단위 : 건, %)

재원구성	주소요재원			부소요재원1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국비	4 (57.1)	3 (42.9)	7 (0.8)	0 (0)	0 (0)	0 (0)
광역시도	6 (37.5)	10 (62.5)	16 (1.8)	1 (50)	1 (50)	2 (6.9)
시군구	561 (65.8)	292 (34.2)	853 (94.9)	7 (38.9)	11 (61.1)	18 (62.1)
기금출자	1 (50.0)	1 (50.0)	2 (0.2)	1 (100)	0 (0)	1 (3.4)
민간재원	2 (66.7)	1 (33.3)	3 (0.3)	3 (100)	0 (0)	3 (10.3)
기타	15 (83.3)	3 (16.7)	18 (2.0)	5 (100)	0 (0)	5 (17.2)
합계	589 (65.5)	310 (34.5)	899 (100)	17 (58.6)	12 (41.4)	29 (100)

4 신설·변경 사회복지장제도의 변동내역에 따른 현황분석

□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장사업의 특성은 크게 신설사업과 변경사업으로 구분되

며, 변경 사회보장사업은 445건(36.1%)임.

- 변경내역을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급여기준변동’, ‘대상자기준변동’, ‘재원부담변동’, ‘정보시스템 활용 및 활용분야 변동’ 측면에서 현황분석 하였음⁵⁾
- 급여기준 변동은 ‘급여기준’, ‘급여유형’, ‘급여주기’, ‘급여량’으로 분류하였으며 대상자 기준 변동은 ‘연령기준’과 ‘장애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급여기준’은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변경된 경우를 의미함
 - ‘급여유형’은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로 구분된 급여 방식을 변경하였을 경우
 - ‘급여주기’는 급여를 지급하는 주기와 횟수를 변경하는 경우
 - ‘급여량’ 변경은 급여유형에 따라 양에 변동이 있을 경우를 집계하였으며, ‘지원규모’ 변경은 대상자 규모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때 그 규모에 상관 없이 1건으로 집계함

5) 이 중 ‘정보시스템 활용 및 활용분야 변동’은 통계 작성의 원자료인 협의요청서에 누락되었거나 변경된 내역의 거의 없어 의미 있는 수치가 산출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

<표 3-2-12> 집단별 변경사업의 변경내역 현황: 급여기준과 대상자기준 변동 현황

(단위: 건, %)

분류	급여기준변동								대상자기준변동	
	급여기준	급여유형	급여주기	급여량					연령기준	장애기준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지원규모		
중앙 부처	24 (27.6)	1 (1.1)	2 (2.3)	14 (16.1)	1 (1.1)	2 (2.3)	9 (10.3)	26 (29.9)	1 (1.1)	0 (0)
시도	40 (16.4)	4 (1.6)	0 (0)	34 (13.7)	2 (0.8)	11 (4.4)	4 (1.6)	32 (12.9)	3 (1.2)	1 (0.4)
시군구	156 (17.3)	9 (1.0)	13 (1.4)	172 (19.2)	9 (1.0)	14 (1.6)	7 (0.8)	134 (14.9)	4 (0.4)	6 (0.7)
합계	220 (17.8)	14 (1.1)	15 (1.2)	220 (17.8)	12 (1.0)	27 (2.2)	20 (1.6)	192 (15.6)	8 (0.6)	7 (0.6)

<표 3-2-13> 집단별 변경사업의 변경내역 현황: 재원부담과 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변동 현황

(단위: 건, %)

분류	재원부담변동						
	국비	광역시도	시군구	기금	민간재원	기타	본인 부담금
중앙 부처	12 (13.8)	4 (4.6)	4 (4.6)	3 (3.4)	1 (1.1)	3 (3.4)	2 (2.3)
시도	4 (1.6)	37 (14.9)	21 (8.4)	0 (0)	0 (0)	4 (1.6)	3 (1.2)
시군구	4 (0.4)	4 (0.4)	130 (14.5)	1 (0.1)	0 (0)	0 (0)	1 (0.1)
합계	20 (1.6)	45 (3.7)	155 (12.6)	4 (0.3)	1 (0.1)	7 (0.6)	6 (0.5)

○ 각 하위 변동 항목은 동시에 2개 이상의 하위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

- 예를 들어, 급여기준과 급여량 모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1건으로 통계에 반영함.

○ 전체 변경 요청 사업 중 급여기준을 변동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급여기준 중에서는 ‘급여기준’과 ‘현금 급여량’이 각각 220건(17.8%)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원규모’ 변경이 192건(15.6%)로 많았음

○ 대상자기준변동에서 ‘연경기준’과 ‘장애기준’ 변경 모두 8건(0.6%), 7건(0.6%)로 변경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재원부담 변동 여부를 살펴본 결과 시군구 재원부담 변동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155건, 12.6%), 그 다음으로 광역 시도(45건, 3.7%), 국비(20건, 1.6%) 순으로 나타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보장사업의 변경 사유는 ‘급여기준’과 ‘급여량’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됨.

5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결과에 따른 현황분석

□ 총 1,233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협의 결과를 기관유형, 사업목적, 사업대상자 별로 분석함.

○ 협의 결과는 ‘동의’, ‘부동의’, ‘대안권고’, ‘반려’, ‘철회’, ‘협의진행중’의 6개로 구분함

<표 3-2-14> 연도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현황

(단위 : 건, %)

협의 결과	2013	2014	2015	2016	합계
동의	53 (86.9)	53 (65.4)	219 (60.7)	433 (59.3)	758 (61.5)
부동의	2 (3.3)	22 (27.2)	47 (13.0)	18 (2.5)	89 (7.2)
대안권고	3 (4.9)	0 (0.0)	22 (6.1)	0 (0.0)	25 (2.0)
반려	3 (4.9)	6 (7.4)	52 (14.4)	76 (10.4)	137 (11.1)
철회	0 (0)	0 (0.0)	18 (5.0)	30 (4.1)	48 (3.9)
협의	0	0	3	173	176

진행중	(0)	(0.0)	(.8)	(23.7)	(14.3)
합계	61 (100)	81 (100)	361 (100)	730 (100)	1233 (100)

□ '13년부터 '16까지 전체 협의 안건 1,233건의 결과는 '동의'가 758건 (61.5%)로 가장 많았고 '협의진행중(176건, 14.3%)⁶⁾, '반려(137건, 11.1%)', '부동의(89건, 7.2%)', '철회(48건, 3.9%)', '대안권고(25건, 2.0%)'의 순으로 많았음

○ 연도 별로 살펴보면 제도 시행 초기인 '13에는 '동의'가 86.9%(전체 61건 중 53건)으로 '14년~'16년이 60% 전후인 것과 비교하여 25% 이상 높은 특징을 보임

○ '부동의'의 경우 '14년에 22건(27.2%)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15년 47건(13.0%), '16년 18건(2.5%)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13년과 '14년에는 협의 결과에 '동의'와 '부동의'를 합한 수치가 90% 이상이었으나 '15년과 '16년에는 협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임

1) 중앙부처 협의결과

<표 3-2-15> 중앙부처의 연도별 신설 변경 여부에 따른 협의결과 현황

(단위 : 건, %)

협의 결과	2013			2014			2015			2016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동의	10 (35.7)	18 (64.3)	28 (93.3)	4 (36.4)	7 (63.6)	11 (78.6)	8 (61.5)	5 (38.5)	13 (100)	1 (7.7)	12 (92.3)	13 (43.3)	65 (74.7)
부동의	2 (100)	0 (0)	2 (6.7)	1 (100)	0 (0)	1 (7.1)	0 (0)	0 (0)	0 (0)	0 (0)	0 (0)	0 (0)	3 (3.4)
대안 권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16년에 '협의진행중' 안건 비율이 높은 것은 통계치 작성 기준 시점이 16년 9월인 것에 기인함

동의	11 (73.3)	4 (26.7)	15 (83.3)	8 (72.7)	3 (27.3)	11 (52.4)	40 (74.1)	14 (25.9)	54 (60.7)	38 (58.5)	27 (41.5)	65 (54.6)	145 (58.7)
부동의	0 (0)	0 (0)	0 (0)	7 (77.8)	2 (22.2)	9 (42.9)	4 (57.1)	3 (42.9)	7 (7.9)	1 (100)	0 (0.0)	1 (0.8)	17 (6.9)
대안권고	0 (0)	0 (0)	0 (0)	0 (0)	0 (0)	0 (0)	2 (33.3)	4 (66.7)	6 (6.7)	0 (0)	0 (0)	0 (0)	6 (2.4)
반려	3 (100)	0 (0.0)	3 (16.7)	1 (100)	0 (0.0)	1 (4.8)	15 (93.8)	1 (6.3)	16 (18.0)	9 (100)	0 (0.0)	9 (7.6)	29 (11.7)
철회	0 (0)	0 (0)	0 (0)	0 (0)	0 (0)	0 (0)	1 (16.7)	5 (83.3)	6 (6.7)	1 (50.0)	1 (50.0)	2 (1.7)	8 (3.2)
진행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9 (69.0)	13 (31.0)	42 (35.3)	42 (17.0)
전체	14 (77.8)	4 (22.2)	18 (7.3)	16 (76.2)	5 (23.8)	21 (8.5)	62 (69.7)	27 (30.3)	89 (36.0)	78 (65.5)	41 (34.5)	119 (48.2)	247 (100)

□ 시도의 협의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음

- 연도별 협의결과를 살펴보면 ‘동의’가 ‘13년 15건(83.3%), ‘14년 11건(52.4%), ‘15년 54건(60.7%), ‘16년 65건(54.6%) 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냄
 - 총 4년간의 전체 협의결과는 ‘동의’ 145건(58.7%), ‘협의진행중’ 42건(17.0%), ‘반려’ 29건(11.7%), ‘부동의’ 17건(6.9%), ‘철회’ 8건(3.2%), ‘대안권고’ 6건(2.4%)의 순이었음
 - 전체 247건 중 ‘동의’가 145건(58.7%)으로 가장 많았지만 중앙(74.7%)과 시군구(61.0%)의 동의 비율보다는 낮은 수치임
 - 중앙과 마찬가지로 ‘13년의 ‘동의’ 비율이 83.3%로 가장 높았으며, ‘14년의 ‘부동의’ 비율(42.9%)이 다른 해에 비해서 눈에 띄게 높은 특징을 보임

3) 기초자치단체의 협의결과

<표 3-2-17> 시군구의 연도별 신설 변경 여부에 따른 협의결과 현황

(단위 : 건, %)

협의결과	2013			2014			2015			2016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신설	변경	합계	
동의	8 (80.0)	2 (20.0)	10 (76.9)	20 (64.5)	11 (35.5)	31 (67.4)	96 (62.9)	56 (37.1)	152 (58.7)	197 (55.5)	158 (44.5)	355 (61.1)	548 (61.0)
부동의	0 (0)	0 (0)	0 (0)	12 (100)	0 (0.0)	12 (26.1)	32 (80.0)	8 (20.0)	40 (15.4)	14 (82.4)	3 (17.6)	17 (2.9)	69 (7.7)
대안권고	3 (100)	0 (0.0)	3 (23.1)	0 (0)	0 (0)	0 (0)	10 (62.5)	6 (37.5)	16 (6.2)	0 (0)	0 (0)	0 (0)	19 (2.1)
반려	0 (0)	0 (0)	0 (0)	2 (66.7)	1 (33.3)	3 (6.5)	30 (83.3)	6 (16.7)	36 (13.9)	53 (80.3)	13 (19.7)	66 (11.4)	105 (11.7)
철회	0 (0)	0 (0)	0 (0)	0 (0)	0 (0)	0 (0)	6 (50.0)	6 (50.0)	12 (4.6)	21 (75.0)	7 (25.0)	28 (4.8)	40 (4.4)
진행중	0 (0)	0 (0)	0 (0)	0 (0)	0 (0)	0 (0)	2 (66.7)	1 (33.3)	3 (1.2)	83 (72.2)	32 (27.8)	115 (19.8)	118 (13.1)
전체	11 (84.6)	2 (15.4)	13 (1.4)	34 (73.9)	12 (26.1)	46 (5.1)	176 (68.0)	83 (32.0)	259 (28.8)	368 (63.3)	213 (36.7)	581 (64.6)	899 (100)

□ 시군구의 협의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음

○ 총 4년간의 시군구 협의 건수는 899건으로 이 중 ‘동의’가 548건(61.0%)로 가장 많았으며 ‘협의진행중’ 118건(13.1%), ‘반려’ 105건(11.7%), ‘부동의’ 69건(7.7%), ‘철회’ 40건(4.4%), ‘대안권고’ 19건(2.1%)의 순으로 나타남

- ‘부동의’는 ‘14년에 12건(26.1%) ’15년 40건(15.4%), ’16년 17건(2.9%)로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제도 시행 초기인 ’13년에는 ‘부동의’, ‘반려’, ‘철회’ 건이 없었으며, ‘대안권고’가 23.1%로 다른 년도에 비하여 높은 특징을 나타냄

4) 사업목적별 협의결과

□ 11개로 분류한 사업목적에 따라 협의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타’를 제외한 모든 사업목적별 분류에서 협의결과로 ‘동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는 ‘동의’가 15건(28.8%), ‘반려’가 30건(57.7%)
 -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사업목적 중 ‘고용(8건, 47.1%)’ 외에는 모두 50% 이상의 높은 ‘동의’ 비율을 보임
 - ‘기타’의 경우는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이나 법정 사회복지기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 협의 건으로 이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외 대상으로 ‘반려’건에 해당함
 - 특히 ‘재해보상’의 경우 대부분의 협의 결과가 ‘동의(180건, 98.9%)’로 나타남
- ‘부동의’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사업목적은 ‘생계(20건, 23.5%)’, ‘생활지원(19건, 7.7%)’, ‘보호돌봄(18건, 7.1%)’이었음.
- ‘대안권고’는 주로 ‘보호돌봄(22건)’ 영역에서만 나타남.

<표 3-2-18> 사업목적별 협의결과 현황

(단위 : 건, %)

사업목적	협의결과						
	동의	부동의	대안권고	반려	철회	협의진행중	합계
보호돌봄	136 (53.8)	18 (7.1)	22 (8.7)	17 (6.7)	10 (4.0)	50 (19.8)	253 (20.5)
요양돌봄	66 (64.7)	10 (9.8)	2 (2.0)	11 (10.8)	4 (3.9)	9 (8.8)	102 (8.3)
교육	42 (50.0)	2 (2.4)	0 (0)	17 (20.2)	8 (9.5)	15 (17.9)	84 (6.8)
건강의료	64 (53.8)	14 (11.8)	0 (0)	5 (4.2)	5 (4.2)	31 (26.1)	119 (9.7)
생활	145	19	1	26	13	42	246

지원	(58.9)	(7.7)	(.4)	(10.6)	(5.3)	(17.1)	(20.0)
고용	8 (47.1)	0 (0)	0 (0)	4 (23.5)	0 (0)	5 (29.4)	17 (1.4)
주거	39 (62.9)	0 (0)	0 (0)	10 (16.1)	2 (3.2)	11 (17.7)	62 (5.0)
문화 여가	16 (51.6)	3 (9.7)	0 (0)	9 (29.0)	1 (3.2)	2 (6.5)	31 (2.5)
생계	47 (55.3)	20 (23.5)	0 (0)	7 (8.2)	4 (4.7)	7 (8.2)	85 (6.9)
재해 보상	180 (98.9)	0 (0)	0 (0)	1 (.5)	0 (0)	1 (.5)	182 (14.8)
기타	15 (28.8)	3 (5.8)	0 (0)	30 (57.7)	1 (1.9)	3 (5.8)	52 (4.2)
전체	758 (61.5)	89 (7.2)	25 (2.0)	137 (11.1)	48 (3.9)	176 (14.3)	1233 (100)

5) 사업대상자별 협의결과 현황

□ 10개로 분류한 사업대상에 따라 협의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산재근로자’와 ‘특수대상 및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사업대상에서 ‘동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보훈대상자’의 경우 ‘동의’가 184건(9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목적별 협의결과 현황의 ‘재해보상’ 동의(180건, 98.9%)와 유사한 결과임
 - ‘보훈대상자’ 외에 ‘동의’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사업대상자는 ‘저소득(96건, 70.6%)’, ‘장애인(90건, 64.7%)’, ‘아동청소년(86건, 57.3%)’, ‘여성가족(146건, 55.9%)’, ‘농어업인(5건, 50.5%)’로 나타남

<표 3-2-19> 사업대상자별 협의결과 현황

(단위 : 건, %)

사업 대상자	협의결과						합계
	동의	부동의	대안 권고	반려	철회	협의진행중	
아동 청소년	86	10	0	14	11	29	150

	(57.3)	(6.7)	(0)	(9.3)	(7.3)	(19.3)	(12.2)
고령자노인	94 (48.0)	36 (18.4)	2 (1.0)	28 (14.3)	9 (4.6)	27 (13.8)	196 (15.9)
장애인	90 (64.7)	6 (4.3)	19 (13.7)	5 (3.6)	3 (2.2)	16 (11.5)	139 (11.3)
보훈 대상자	184 (98.9)	0 (0)	0 (0)	1 (.5)	0 (0)	1 (.5)	186 (15.1)
여성 가족	146 (55.9)	26 (10.0)	4 (1.5)	14 (5.4)	13 (5.0)	58 (22.2)	261 (21.2)
다문화외국인	16 (36.4)	6 (13.6)	0 (0)	14 (31.8)	1 (2.3)	7 (15.9)	44 (3.6)
저소득	96 (70.6)	2 (1.5)	0 (0)	15 (11.0)	8 (5.9)	15 (11.0)	136 (11.0)
산재 근로자	1 (33.3)	0 (0)	0 (0)	0 (0)	0 (0)	2 (66.7)	3 (0.2)
농어업인	5 (50.0)	1 (10.0)	0 (0)	0 (0)	0 (0)	4 (40.0)	10 (0.8)
특수 대상기타	40 (37.0)	2 (1.9)	0 (0)	46 (42.6)	3 (2.8)	17 (15.7)	108 (8.8)
합계	758 (61.5)	89 (7.2)	25 (2.0)	137 (11.1)	48 (3.9)	176 (14.3)	1233 (100)

○ ‘부동의’은 ‘고령자노인’이 36건(1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문화·외국인’과 ‘여성가족’이 각각 6건(13.6%)와 26건(10.0%)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면 ‘보훈대상자’와 ‘산재근로자’는 ‘부동의’건이 없었음

○ ‘대안권고’ 전체 25건 중 19건이 ‘장애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장애인’ 관련 안건 중 지자체의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사업의 경우 하루 16시간 이상의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하여 ‘야간순회서비스’ 등의 대안을 권고한 사례가 다수였던 것에 기인함

○ ‘특수대상 및 기타’에서는 ‘반려’가 46건(42.6%)으로 ‘동의(40건, 37.0%)’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특수대상 및 기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경로당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다수로 협의조정 제외 대상이므로 ‘반려’ 건에 해당

- 이 외에 ‘다문화·외국인(14건, 31.8%)’, ‘고령자·노인(28건, 14.3%)’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려’ 비율이 나타남
- ‘철회’의 경우 건수로는 ‘여성·가족’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율로는
‘아동·청소년’이 7.3%로 가장 높음

제 4 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관리 개선방안

- 제1절 심사관련 업무 전자화 적용사례 분석
-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관리 목표시스템
- 제3절 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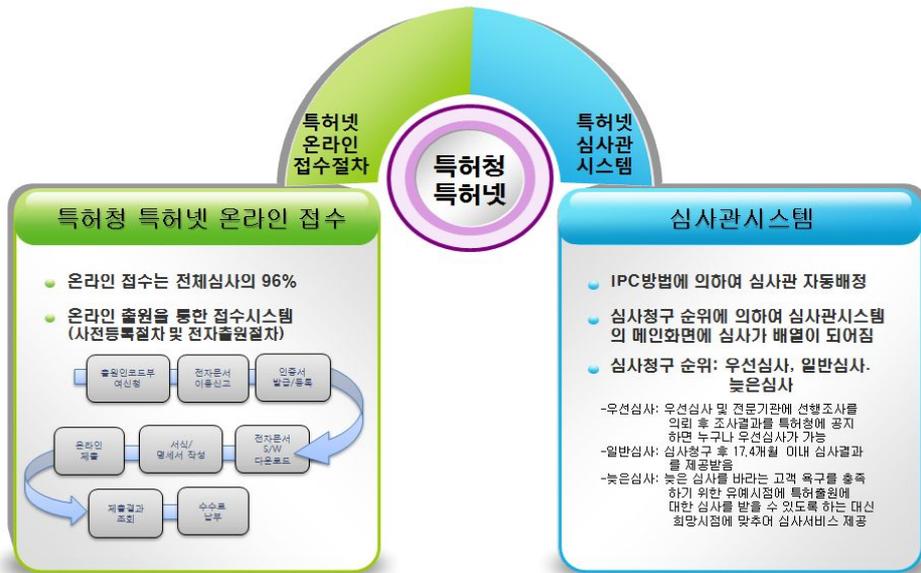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관리 개선방안 <

제1절 심사관련 업무 전자화 적용사례 분석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업무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 기능에 살펴보기 위하여 유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함.

○ 특허청의 특허넷은 특허 출원·심사·등록·심판 및 공보발간 등의 모든 특허 행정 업무처리를 전산화한 통합전산시스템임(그림 4-1 참조).⁷⁾

[그림 4-1-1] 특허넷 온라인 접수 및 심사관시스템



7) <http://www.kipo.go.kr/home/portal/nHtml/Keaps/KiponetIntro.html> 2016.11.14. 17:26 인출

출처: 이연화·진달래(2011),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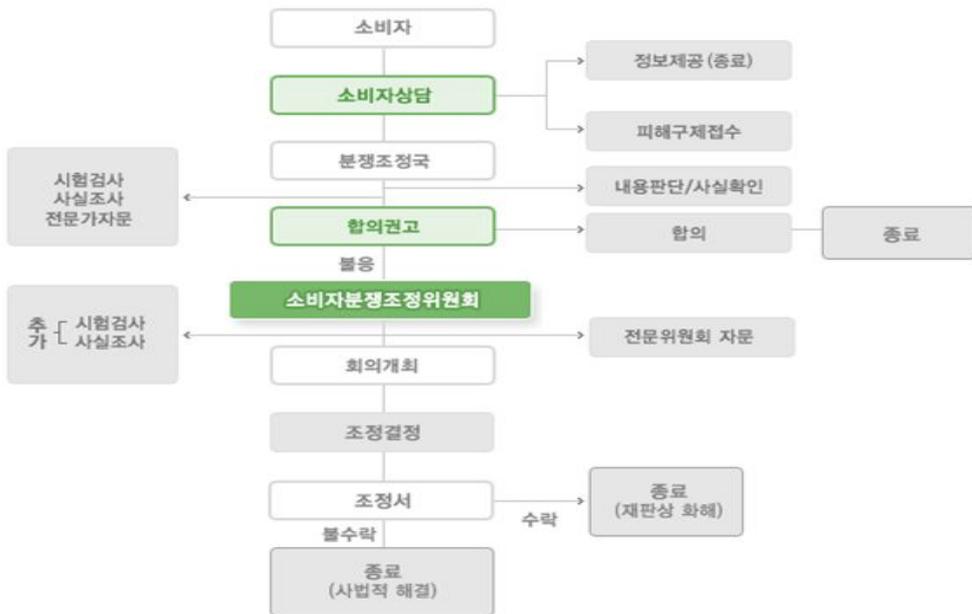
- 특허청은 특허 출원·심사 등의 접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도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산화한 심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심사관에 의해 수행되던 특허 심사업무를 전산화하여 심사처리내역, 처리건수, 심사처리대상 등에 관한 정보 관리.
 - 최근, 특허청은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과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을 갖추으로써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음.
 - 특허 심사관은 DB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간을 기술 판단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음.⁸⁾
 - 이처럼 특허넷과 심사시스템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소비넷 관리자시스템
- 소비넷 관리자시스템의 워크플로우는 분쟁조정요청등록/접수→담당자배분→사건보고서 작성→조정위원회 회의 등록→참석위원회 등록→안전상정→출석통보서 작성→위원회 개최통보→조정결과과 등록→조정결정서 작성→조정결정서 PDF변환→조정결정통보서→수락/불수락관리→조정결정통지일등록→성립/불성립 통보서→처리 후 결과 관리→송달증명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침.
 -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는 상담업무, 피해구제업무, 기타업무로 분류함.
 - 상담업무는 신청인의 피해내용에 대한 구체적 파악을 통해 자체 해결방안제시, 의료과실 유무, 의료관련정보를 제공
 - 자세한 사건내용을 기재한 자료구비 후 피해구제 접수하도록 안내

8) 특허청 보도자료(2015.12.14.), 특허청, 스마트 심사시스템 개통

함.

- 피해구제업무는 피해구제 접수되면 담당자가 지정되며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추가자료가 있을 경우 요청함.
-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SMS발송 혹은 유선으로 담당자 및 전화번호, 처리절차,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을 함.

[그림 4-1-2]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출처: 이연희·진달래(2011),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심판원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은 행정심판포털시스템과 행정심판심의시스템, 행정심판처분청지원시스템, 행정심판정보시스템, 행정심판 통합정보DB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행정심판포털시스템은 행정심판청구, 진행사항조회, 재결서발급, 문의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처리함.

- 온라인 행정심판사이트는 행정심판안내,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 사건조회, 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심판 질의응답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4-1-3] 온라인행정심판 포털사이트(<https://www.simpan.go.kr>) 화면



– 행정심판심의시스템은 안건검토/검토의견서 작성/회의 진행/회의 일정 관리 등의 기능을 처리함.

- 행정심판 심의위원들이 시스템 이용자이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는 경우 상호주장 내용을 정리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될 때 상정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운영 되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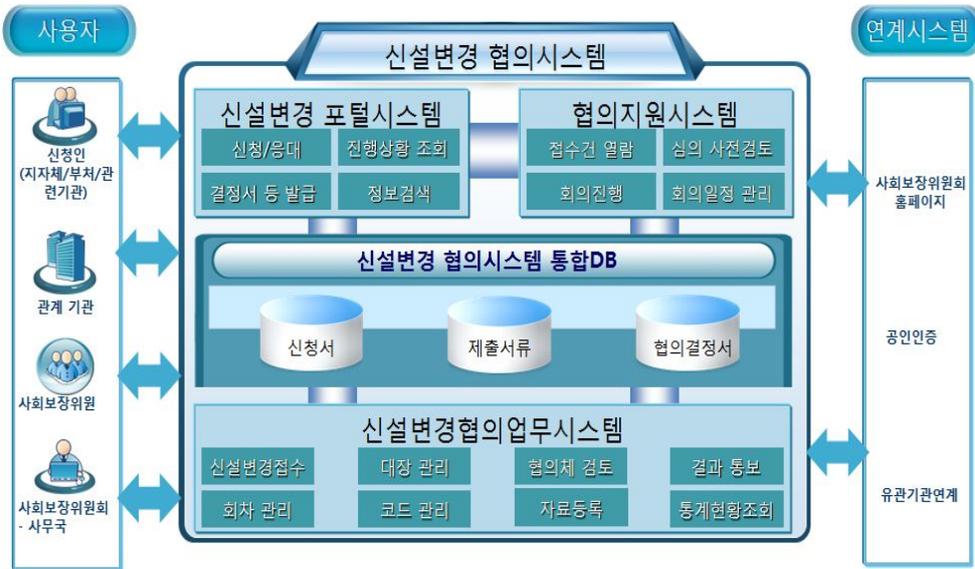
- 행정심판처분청지원시스템은 사건접수, 답변서작성, 재결서변환, 진행상황 조회 등의 기능을 처리함.
 - 행정심판 처분청지원시스템 이용대상은 처분청 행정기관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접수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고 위원회로 송부, 청구인의 보증서면에 보충답변을 제출하고 각종 신청사건에 대하여 재결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및 관리 시스템임.
- 행정심판정보시스템은 사건원장관리, 검토의견서 작성, 의결서 작성, 통계정보 조회 등의 기능을 함.
 - 행정심판정보시스템 이용대상은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관련정보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관련정보를 가지고 안건을 조사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함.
- 행정심판통합정보DB는 문헌자료, 답변서, 재결서, 검토의견서/의결서, 재결례/재결요지, 보충서면 등의 정보를 구축하고 있음.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관리 목표시스템

- 신설·변경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협의조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 및 산출물의 시스템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임.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요청건에 대하여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됨.
- 이러한 협의·조정 절차는 지금까지 수동으로 처리되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관련된 사업의 이력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과 관련된 협의·조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시스템을 제안함.

- 신설변경협의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으로 칭함)의 주요 이용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및 기관, 사회보장위원회이며 이 외에도 대국민이 포함될 것임.
 - 정보시스템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및 기관인 신청자와 이를 협의·조정·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 그리고 일련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대국민이 이용하게 됨.
- 정보시스템은 신설변경포털시스템, 협의지원시스템, 신설변경협의업무시스템, 신설변경 협의 통합DB 등으로 구성함(그림 4-4 참조).
 - 사회보장제도 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는 건에 대한 관리의 체계화 및 협의절차상황 정보의 제공 및 온라인 기반의 협의·조정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진,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기일 준수 토대가 마련됨.

[그림 4-2-1] 사회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시스템 목표이미지



1. 신설·변경 포털시스템

□ 신설·변경 포털시스템은 온라인상의 신설·변경 신청을 응대하거나 각종 자료 제출 및 신청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조회하는 기능을 수행함.

- 온라인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신청
- 협의·조정절차 개시 신청건 절차진행상황 조회
- 각종 신청 및 자료제출 온라인 처리
- 협의·조정 결정서 발급
- 조정절차 안내
- 서식 작성사례 참조 각종신청서 작성 도우미 제공
- 협의·조정 유사사례 정보 검색

2. 신설·변경 협의업무시스템

□ 신설·변경 협의업무시스템은 신설·변경 접수관리, 협의·조정 결정서 작성 지원, 협의체 개최관리, 각종 기일통지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신설·변경 접수관리

- 요청서 반려/접수처리
- 요청서 통지(협의체)

○ 협의·조정 관리

- 협의·조정절차 개시
- 자료제출 요청(요청/보완 자료 등록)
- 업무단계별 업무수행 처리(해당 담당자)
- 각종 신청, 변동사항 처리/각종 통지 관리
- 협의·조정결과 동의여부 관리/통계 현황유지 관리

○ 협의·조정 결정서 작성 지원

- 신청서 조정결정서 예시 조회 검색
- 협의·조정결정서 양식 출력 지원

○ 협의체 개최관리

- 협의체 개최관리(기일통지, 참석통지)
- 의견작성 제출 등 지원
- 심의 조정결과 등록

3. 협의지원시스템

□ 협의지원시스템은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변경요청건에 대한 접근 열람 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충실한 조정업무 수행을 지원함.

○ 요청건 열람 검토

- 신청건 열람 검토
 - 요청건에 대한 각종 자료 정보를 열람
 - 협의체 개최 전 사전검토
 - 의견작성 제출 등 지원
- 일정 관리
- 회의 참석일정 관리
 - 이진 참여 협의체 차수 및 요청건 조회
 - SMS, 이메일을 통한 일정 수신

제3절 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와 관리자용 서비스로 구분함.

- 사용자는 신설·변경 요청자와 대국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용자서비스는 다시 고객센터와 신설·변경서비스로 나눔.
 - 고객센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써 사회보장제도 안내 및 과거 협의·조정된 제도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통계서비스가 포함됨.
 - 신설·변경서비스는 신설·변경을 요청하는 지자체 및 부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위한 서비스임.
- 관리자서비스는 사회보장위원회 및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협의·조정 업무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를 처리하게 됨.
 - 관리자서비스에서 수행하는 기능으로는 코드관리, 협의지원, 업무관리, 통계관리를 포함하게 됨.

[그림 4-3-1] 신설변경협의시스템 메뉴구조도



□ 메뉴별 기능 개요

○ 신설변경서비스 메뉴에는 로그인, 신청안내/매뉴얼, 공지/소식/자료, 신청/응대, 진행상황조회, 결정서 등 발급, 개인정보변경, 비밀번호변경 기능을 포함함.

－ 로그인

-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1단계로써 시스템 접근은 아이디의 권한에 따라 기능사용을 제한함.
- 대국민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로그인 후 권한별 시스템 접근이 가능함.

－ 신청안내/매뉴얼

- 신청절차 및 시스템 사용에 관한 안내
- 매뉴얼 다운로드

－ 공지/소식/자료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공지사항 혹은 소식 안내 게시판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과 관련된 서식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과 관련된 자료 게시판

- 신청/응대

- 요청서 접수대상 목록조회
- 온라인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신청
- 협의신청서 임시저장
- 요청서 접수번호 발급
- 서식 작성사례 참조 신청서 작성 도우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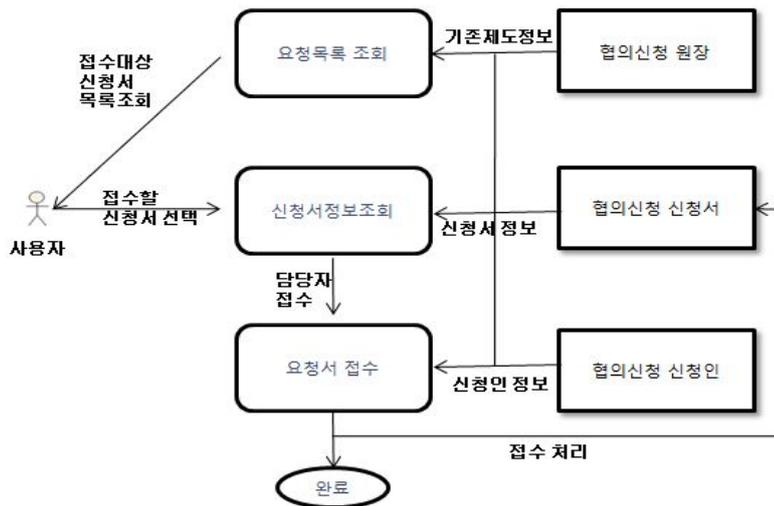
- 결정서 등 발급

-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지자체에 협의결정서(회신 양식) 작성 후 통지/수신

-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변경

- 아이디 접속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변경 기능

[그림 4-3-2]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 예시



- 코드(기준)관리 메뉴는 접수코드관리, 관리자 및 담당자 계정관리, 관리항목관리, 각종코드관리가 포함됨.
 - 접수코드관리
 - 접수코드는 신설·변경을 요청한 건에 대한 고유번호 생성 및 조회
 - 관리항목관리
 - 용어관리
 - 메뉴 항목 관리
 - 권한관리
 - 시스템 메뉴별 접근권한 부여
 - 지자체/부처/기관 담당자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사무국/협업체 위원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차등 부여
 - 관리자 및 담당자 관리
 - 시스템 관리자 등록 및 권한 부여
 - 지자체/부처/기관 담당자 인적사항 업데이트
 - 각종코드관리
 - 공통 코드 관리
 - 기관코드 관리
- 협의지원메뉴는 접수건 열람/조회, 대장관리, 심의 사전검토, 회의진행, 회의일정 관리, 진행상황 처리, 접수건 정보관리 등이 포함됨.
 - 접수건 열람/조회
 - 요청서 정보 조회
 - 요청 접수목록 조회
 - 요청서 접수 결재
 - 대장관리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첨부물, 요청서 제목, 등록번호, 담당자, 협의결

정, 종결일자 등에 대한 정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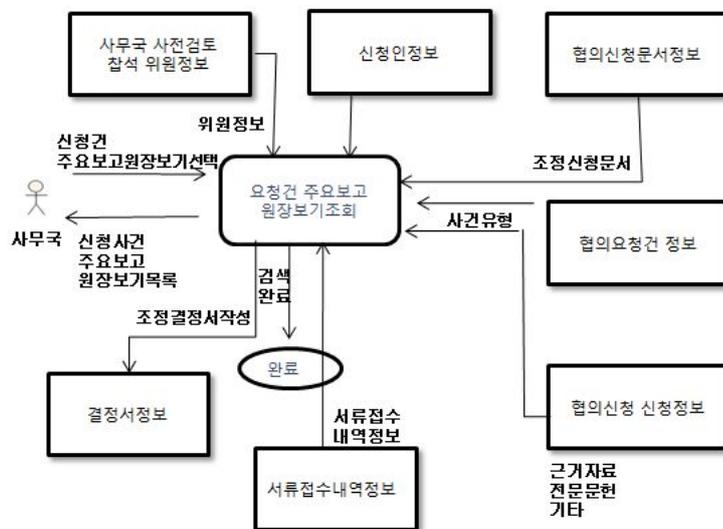
– 심의 사전검토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협의 요청건에 대한 항목별 사전검토
- 추가 제출서류 요청
- 항목별 검토내용 기술
- 사전검토 결과서 작성

– 회의일정 관리

- 협의체/위원회 회의일정
- 요청서 협의기한 관리

[그림 4-3-3] 심의 사전검토 프로세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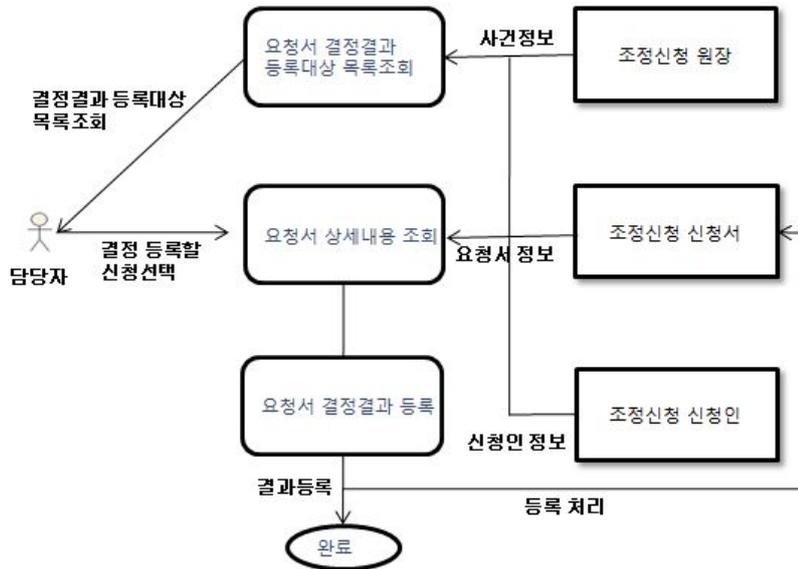
○ 업무관리메뉴에는 사업관리, 협의체 검토, 자료 등록, 결과 통보, 회차 관리, 유사사업 검색 등의 기능이 포함됨.

– 사업관리

- 협의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의 상세내역 정보

- 협의체 검토
 - 사무국 사전검토결과 추가적인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토함.
 - 협의체 검토는 사전검토와 유사한 기능 제공
- 회차 관리
 - 협의요청건에 대한 이력 상세내역 조회
 - 신청 회차 코드 관리
- 결과 통보
 - 협의조정결과 등록
 - 종결요청건 대상 목록조회
 - 종결등록 처리

[그림 4-3-4] 협의결정결과 관리 프로세스 예시



○ 통계관리메뉴는 접수통계, 처리통계, 담당자통계, 통계검색, 접속로그통

계가 포함됨.

－ 접수통계 및 처리통계

- 연도별·시도별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 통계검색

- 동의/부동의/반려/신설/변경/복지대상별 통계 등을 검색

－ 접속로그통계

- 접속자로그통계는 시스템에 접속한 아이디 및 접속시간, 접속IP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줌

제 5 장 결론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시사점

제1절 결론

- 사회보장제도와 예산은 급속히 확대되어 2017년 복지예산은 130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6년 기준 사회보장사업은 357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은 5,300여개에 이를 만큼 우리나라의 복지부문의 양적인 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졌음.
- 이러한 과정에서 칸막이식 사업의 집행과 부처 및 지자체별로 산발적인 복지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사회보장사업 설계의 내실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사회보장사업의 산발적인 팽창을 지양하고, 범정부 측면에서 합리적인 사회보장사업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이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집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협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의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장 제20조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과 제5장 제26조 사회보장제도의 협의 및 조정과 함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에 근거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부터 협의·조정이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협의·조정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화 지원 방안을 살펴보는 데 있음.

○ 첫째, 2013년부터 협의·조정을 거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사업 속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보 분류틀을 도출하고, 이를 준거틀로 설정하여 협의조정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였음.

○ 둘째, 협의조정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사업 DB 구성안을 도출하고, 정보화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진 사회보장제도의 분석틀은 사업의 내역정보를 중심으로 도출하였음.

○ 이는 사업 식별번호, 사업개요, 사업유형, 사업속성, 협의 및 조정 내역을 준거로 하여 대분류, 중분류 그리고 소분류로 구분하였음.

○ 대분류는 사업개요, 사업유형, 사업속성, 협의진행, 협의완료, 조정으로 구분되며, 사업개요는 식별번호, 신청기관, 신청유형 그리고 사업근거로 구분됨.

○ 사업유형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목적, 대상자, 복지예산 그리고 보건의료 예산으로 구분함.

○ 사업속성은 급여기준, 급여유형, 전달체계, 자원, 정보시스템으로 구분되고, 협의진행은 회의단계, 통보단계로 구분하였음.

○ 협의완료는 협의결과정보, 최종결과 및 사유 그리고 조정단계는 조정진행과 조정내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2013년부터 협의·조정과정을 거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은 총1,233건이며, 협의·조정 건은 매년 급증하였음.

○ 2013년 신설 37건(60%), 변경 24건(40%), 2014년에는 신설 56건(69.1%), 변경 25건(30.9%), 2015년에는 신설 246건(68.1%), 변경 115건(31.9%), 2016년에는 신설 449건(61.5%), 변경 281건(38.5%)의 사회보장사업이 협의요청이 이루어짐.

- 그간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사회보장사업은 변경(445건)보다 신설(788건)이 많았으며, 2013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안건이 늘어났음.
- 협의조정 제도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변경 사업은 총 1,14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중앙부처는 총 87개의 사회보장제사업이 협의조정 과정을 거침.
 - 2013년부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요청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171건, 전북 131건, 전남 123건, 경남 94건, 인천 91건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제주 15건, 세종 17건, 울산 19건, 대구 19건순으로 협의요청이 낮았음.
- 본 연구는 협의조정 과정을 거친 1,223개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을 분석하여 목적별, 대상자별,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음.
 - 사회보장제도 목적별 11개 범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호돌봄’ 253건(20.5%), ‘생활지원’ 246건(20.0%), ‘재해보상’ 182건(14.8%), ‘건강의료’ 119건(9.7%)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임.
 - 반면에 ‘고용’ 17건(1.4%), 문화여가 31건(2.5%) 등은 낮은 빈도를 보였음.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보호돌봄’과 ‘생활지원’, ‘건강의료’의 비중은 높았으나, 중앙부처는 ‘생계’와 ‘교육’, 지자체는 ‘재해보상’과 ‘요양돌봄’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사회보장제도 대상자별 10개 범주를 기준으로 구분지어보면 ‘여성가족’ 261건(21.2%), ‘고령자노인’ 196건(15.9%), ‘보훈대상자’ 186건(15.1%), ‘아동청소년’ 150건(12.2%), ‘저소득’ 136건(11.0%)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임.
 -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13년과 ’14년에는 각각 2건과 4건으로 협의요청 건이 적었으나, ‘15년과 ’16년은 58건과 86건으로 급증하였음.

- 아울러 '보훈대상자'는 '13년 1건, '14년 4건, '15년 39건, '16년 141건으로 협의안건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
- 사회보장제도를 복지예산과 보건예산으로 구분지어 살펴보면, 복지예산은 '보육가족 및 여성' 319건(25.9%), '취약계층지원' 257건(20.8%), '노인청소년' 251건(20.4%), '보훈' 186건(15.1%)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보건 예산은 '보건의료'가 67건 '건강보험' 9건과 '식품의약품안전' 1건순으로 높게 나타남.
 - 예산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보육가족 및 여성'과 취약계층지원 그리고 노인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요약하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유형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보호돌봄'과 '생활지원' 관련 사업이 많았으며, 대상자별로는 '여성가족'과 '고령자노인', '보훈'을 위한 사업이 많았고 예산항목 기준으로는 '보육가족 및 여성'과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사업 유형이 높게 나타남.
 - 즉, 전체적으로 신설변경 사업의 특성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협의조정 과정을 거친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유형을 살펴보면 현금성 사회보장제도의 비중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중앙부처는 바우처, 지자체는 현금성 사회보장제도가 높은 수치를 보임.
 - 중앙부처의 급여유형별 빈도는 '현금' 38건(43.2%), '서비스' 28건(31.8%), '바우처' 13건(14.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 지자체는 '현금' 777건(65.5%), '현물' 145건(12.2%) '서비스' 142건(12.0%), 순으로 높게 나타나,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급여유형은 차이가 있음.
 - 즉,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급여유형은 '현금'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특성 차이가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예산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사업의 신설이 높게 나타났고, 중앙부처의 경우는 바우처 관련 사업의 변화가 컸음.
- 신설 및 변경사업 1,233건의 협의결과 ‘동의’가 758건(61.5%)로 가장 많았고 ‘협의진행중’ (176건, 14.3%), ‘반려’(137건, 11.1%), ‘부동의’ (89건, 7.2%), ‘철회’ (48건, 3.9%), ‘대안권고’ (25건, 2.0%)의 순으로 높았음.
- 제도 시행 초기인 2013년에는 전체 61건 중 53건이 ‘동의’(86.9%)였으며, 2014년에는 전체 81건 중 53건(65.4%), 2015년은 전체 361건 중 219건(약60.7%), 2016년은 전체 739건 중 433건(59.3%)이 ‘동의’결과를 보임.
 - ‘부동의’의 경우 2014년에 22건(27.2%)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15년 47건(13.0%), 2016년 18건(2.5%)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동의’ 비율은 중앙부처가 74.7%(전체 87개 사업 중 65개 사업)로 광역자치단체 58.7%(전체 247개 중 145개 사업)와 기초자치단체 61.0%(899개 사업 중 548개 사업)의 비율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부동의’ 비율은 중앙부처가 3.4%(3개 사업)로 광역자치단체 6.9%(17개 사업), 기초자치단체 7.7%(69개 사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즉,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설·변경사업은 총 1,233건이며, 이 중 ‘동의’가 758건(61.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부동의’는 89건(7.2%)이었음.
 - 협의 조정이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업의 부동의가 전체 1,233건 중 89건으로 동의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였음.
 - ‘부동의’ 89건을 살펴보면 ‘변경’이 16건(18%)보다 ‘신설’이 73건(82%)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보다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의 비율이 높았음.
- 협의과정을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는 총 1,146건으로 광역자치

단체 247건과 기초자치단체 899건으로 구분됨.

○ 이들의 협의결과를 살펴보면 ‘동의’가 693건(광역 145건, 기초 548건)으로 약60% 이르는 반면, ‘부동의’는 86건(광역 17건, 기초 69건)으로 약 7.5%에 불과함.

○ 뒤를 이어 ‘반려’가 총 134건(광역 29건, 기초 105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안권고는 총25건(광역 6건, 기초 19건)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즉,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협의요청이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았으며, ‘동의’(693건, 56%) 비율이 ‘부동의’(86건, 7.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 그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및 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협의조정 결과정보의 관리에 있어 한계가 있었으며, 협의조정 과정도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 이를 해결코자 협의조정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사회보장제도 구성 분석틀을 준거틀로 DB 항목을 구성하고, 업무처리 전산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협의조정에 필요한 전산화 기능은 요청 건 열람 검토, 신청건 열람 검토, 요청건에 대한 각종 자료 정보를 열람, 협의체 개최 전 사전검토, 의견작성 제출 등 지원 등이 필요하며, 주요 일정관리 기능이 필요성을 제기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의 업무 정보화를 통해 관련 사업 정보공유 및 업무처리 전자화 구현이 필요함.

○ 전산시스템을 신설변경 포털시스템, 신설변경 협의업무시스템, 협의지원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포털시스템은 온라인상 신설·변경 신청 응대 및 각종 자료제출, 진행상황 조회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 협의업무시스템은 접수관리, 협의조정 관리, 결정서 작성 지원, 협의체 개

최관리 기능이 필요하며, 협의지원시스템은 요청건 열람 검토, 일정 관리 등에 대한 기능이 필요함.

- 해당 시스템의 사용자는 협의조정 요청을 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위한 관리자용 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아울러, 대국민을 위한 협의조정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이를 통해 협의조정이 필요한 신설 및 변경 사회보장제도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그리고 협의조정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임.

제2절 정책 시사점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추진하여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부족하다는 견해와 산발적인 복지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복지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들이 양산되어 재정문제 및 산발적인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음.
-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사업이 양적으로 늘었지만, 급증한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신설 및 변경 복지제도의 협의·조정은 복지축소 또는 권한개입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도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 충족과 재정건전성의 확보의 필요성이 대립되기도 하는 등 사회보장 정책의 협의와 조정을 하는데 양면성이 드러남.
- 다양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범정부

적 측면에서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중요한 사안임.

○ 즉, 지방자치의 가치와 복지욕구 충족성을 고려하여 복지확대의 필요성과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산발적인 양적 팽창보다는 범정부적 측면에서 복지사업의 안정적 확대가 필요함.

○ 즉, 한정된 복지재화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측면 또는 중앙과 지방간 정부 간 관계측면에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함.

□ 이러한 문제점 인식하에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정책조정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

○ 2013년부터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신설·변경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범정부 측면에서 사업간 관계성을 검토하여 왔음.

○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를 위시로 하여 부처 간 정책중복 현상과 중앙과 지자체간 정책갈등의 문제가 표면으로 부각됨으로써, 단기간에는 갈등이 부각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국가복지 정책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안임.

□ 그간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조정은 자료의 접근한계로 사회보장제도 축소, 또는 복지예산 삭감으로만 비춰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이 협의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자체별 정책 컨설팅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의 체계성이 제고되는 정책효과가 있었으며, 국가사회보장제도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등 협의조정의 정책효과가 간과된 면이 있음.

□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시행 이후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협의제도에 대한 대국민을 위한 이해를 구하는데 역부족이었음.

○ 특히, 신설 및 변경사업 1,233건의 협의결과를 살펴보면 ‘동의’가 758건

(61.5%)로 가장 많았고 ‘부동의’ 89건으로 전체 7.2%이었음도 불구하고 대국민 정보는 ‘부동의’에 대한 부문에 집중화 되어 있었음.

- 즉,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추진 이후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였으며, 산발적인 협의조정 절차의 체계화가 필요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 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업무처리가 산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특히, 2016년 9월 기준 협의요청 730건을 소수의 인원으로 사업 내역을 검토하고, 사업변경 및 신설 기관과 협의해야하는 등 업무 부담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협의제도 업무처리 과정을 효율화 하고, 타 사업과의 비교 및 사업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처리 전산화가 필요함.
-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협의요청 기관별, 사업 목적별, 사업 내역, 사업 유형별로 현황분석을 실시하였음.
 - 이를 위해 그간 산발적으로 관리되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속성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분류틀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사업정보 DB 구성틀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협의제도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화와 지속가능한 정보관리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함.
 - 첫째,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대국민뿐만 아니라 협의대상자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의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핵심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 요청한 사회보장제도의 속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DB 구축이 필요하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조정 관련 업무처리의 전산화가 필요함.

- 둘째, 협의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대상자에 따라 정보형태와 제공방식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음.
 - 대국민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별 또는 사업 유형별 사회보장제도 정보를 이해 용이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을 설계하고 협의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에게는 협의과정 및 재설계에 대한 컨설팅 자료 제공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신설변경 제도의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 전산화가 필요하지만, 정보화의 역기능을 경계할 필요성이 있음.
 - 협의제도 절차의 전자화로 기입정보 및 수집정보가 많을수록 신청기관은 업무 부담이 발생하여 전자화 지원 목적과 달리 업무부담 등 목적전치현상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제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산화가 추진되어야 함.

참고문헌 <

<

- 이연희, 진달래(2011), 의료분정조정중재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홍원, 정경희, 김동진, 최복천, 성은미, 양미선, 류진아(2015),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보장위원회(2013).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결과 내부자료.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위원회(2014).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결과 내부자료.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위원회(2015).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결과 내부자료.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위원회(2016).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결과 내부자료. 사회보장위원회
- 함영진, 박선미, 김경준, 이대영, 장영미, 추병주, 이인수, 최현수, 이준영, 김철주, 김성욱, 정영철, 김영은(20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기발전 방향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함영진, 이대영, 김경준, 이인수(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정보 통합관리체계 방안 마련 연구. 사회보장정보원.
- 온라인행정심판 포털사이트 <http://www.simpan.go.kr>